연구보고서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 구 보 고 서
1 6 - 1 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33-1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에서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EU가 취해왔던 다자주의 우선정책을 생각한다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서 회원국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왔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초국가기구로서 EU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 국가들이나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FTA의 외연을 넓히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

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정책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본원에서 유럽 연구를 담당해왔던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본원의 경영진으로 봉사하다가 다시금 유럽 연구로 돌아와 이 연구의 총 책임을 맡은 김흥종 선임연구위원과 유럽팀의 이철원 전문연구원, 이현진 전문연구원, 양효은 전문연구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유덕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위기, 그리스 위기, 브렉시트 등 급속히 변화하는 유럽경제환경에서 통상정책의 복잡한 측면을 잘 포착하여 세 가지 핵심사항에 집중한 것은 그동안 연구를 해온 경험과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잘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연구자문을 해온 최낙균 선임연구위원과 심의위원을 맡아준 김영귀 연구위원,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유형철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경희 과장,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전문위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의 오류는 저자의 몫이겠으나 그동안 자문위원과 여러 심의위원들이 보여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 연구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통합의 미래가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때, EU 신통상정책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강한 회복세 없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28개국의 대외통상에 관한 이해관계를 집약하고 있는 EU의 신통상정책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대EU 경제통상 전략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통상정책을 수행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캐나다 CETA, EU・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경

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

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중・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6

제1장 서론 ····· 23

1. 연구의 배경 ····· 24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7
3. 보고서의 구성 ····· 29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 31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 32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 32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 35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 37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 38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 43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 45
3. 소결 ····· 48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 51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 52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 56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 59
   가. 한 · EU FTA 사례 ····· 59
   나. EU · 캐나다 FTA(CETA) ····· 61

다. TTIP 전략 ····· 63
4. 소결 ····· 71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 75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 76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 76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 80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 81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 81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 84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 88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 89
4. 소결 ····· 98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 101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 102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 102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 104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 106
가. GVC 활용의 증가 ····· 106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 110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 116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 118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 123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 123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 124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 126
4. 소결 ····· 134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37

1. 요약 ····· 138
2. 정책 시사점 ····· 142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 142
나. 평가체제 및 고용 ····· 143
다. GVC 활용 극대화 ····· 144

참고문헌 ····· 147

부록 ····· 155

Executive Summary ····· 165

표 차례

표 2-1. EU의 FTA 추진 현황(2016년 10월) ····· 39
표 3-1. 미 · EU FTA(TTIP)의 주요 협상 일정 및 내용 ····· 64
표 3-2. 미 · EU FTA(TTIP) 주요 장별 EU의 협상 목적 ····· 68
표 3-3. EU와 미국의 글로벌 규범전략 비교 ····· 70
표 4-1. 수정 리스본전략 요약 ····· 78
표 4-2. 이행평가에서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 83
표 4-3. 한 · EU F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완전 개방 시의 영향 ····· 89
표 4-4. 한 · EU FTA와 EU · 캐나다 CE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의 고용 관련 주요 내용 ····· 91
표 4-5. EU · 캐나다 CE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협상 시나리오별 농업, EU의 가공농산물 및 수산업 부문 장기고용 변화 예상치 ····· 92
표 4-6. EU · 일본 FTA 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 부문별, 노동자 기술력별 EU 고용 변화 예상치 ····· 95
표 4-7. TTIP 영향평가(IA) 및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EU 고용 관련 주요 내용 ····· 97
표 5-1.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 107
표 5-2. 비EU 국가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 108
표 5-3.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 113
표 5-4.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 113
표 5-5. 품목고급화지수(PSI) 도출의 예 ····· 117
표 5-6. 1995~2014년 국가고급화지수(CSI)의 변화율 ····· 119
표 5-7. FTA에 나타난 WTO plus와 WTO extra 관련 분야 ····· 125
표 5-8. 2015년 EU 회원국의 서비스 역외무역 ····· 128
표 5-9. 2014년 EU 분야별 서비스 수출 ····· 129
표 5-10. 산업표준화기구의 예 ····· 132

그림 차례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 29
그림 2-1. FTA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 41
그림 2-2. 수출입 및 투자에서 FTA의 비중 ····· 41
그림 2-3. 지역별 EU 대외무역 비중(2005년) ····· 45
그림 2-4. 지역별 EU 대외무역 비중(2014년) ····· 46
그림 2-5. EU 회원국별 역외수출과 연계된 역내 일자리 수 현황 (2011년 기준) ····· 47
그림 2-6. EU 회원국별 역외수출과 연계된 역내고용 수준 현황 (2009년) ····· 48
그림 4-1. FTA 협상 단계별 이행평가 절차 ····· 84
그림 4-2.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절차 ····· 88
그림 4-3. 한 · EU F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한 · EU FTA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에 미치는 영향 ····· 90
그림 5-1. GATS의 양허와 각국의 실제 양허수준 간의 차이 ····· 106
그림 5-2. 총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의 비중(EU 28개국) ····· 107
그림 5-3. 총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의 비중(비EU 국가) ····· 108
그림 5-4. 가치사슬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의 예 ····· 109
그림 5-5. 총 수출 중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 110
그림 5-6.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 111
그림 5-7. 총 수출 중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 111
그림 5-8.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EU 28개국) ·· 112
그림 5-9. 총 수출 중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EU 28개국) ·· 112
그림 5-10. 총 수출 중 해외생산의 부가가치와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부가가치 비중 ····· 114
그림 5-11. 1995~2008년 GVC 관련 고용량 증감 ····· 116

그림 5-12. EU 회원국의 국가고급화지수(CSI) 변화 ····· 120
그림 5-13. 고급화 품목별 수출비중 분포(1995년) ····· 121
그림 5-14. 고급화 품목별 수출비중 분포(2014년) ····· 122
그림 5-15. 지재권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EU 내 고용(2010년) ····· 133
그림 5-16. 지재권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EU 내 부가가치 생산 (2010년) ····· 133

부록표 차례

부록표 1. 영향평가(IA)에서 반드시 답변되어야 하는 질문 목록 ····· 157
부록표 2. 상품고급화지수(PSI: Product Sophistication Index) ····· 162

부록그림 차례

부록그림.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의 통상적 진행 ····· 15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1967년 관세동맹 형성 후 통상정책을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의 핵심 중의 하나로 발전시켜온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00년대 들어와 보다 공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내세우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관세철폐와 같은 고전적인 시장 접근방식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규범,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망라하는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EU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원국에서 이전하여 EU가 갖는 배타적인 통상정책의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의 시장 접근 노력을 위임받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포함되어 있다.

2004년 11월 새롭게 구성된 EU 집행위원회의 바로수(J. M. Barroso) 위원장 체제에서 통상장관(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에 임명된 만델슨(P. Mandelson)은 EU의 대외통상정책이 경쟁력있는 유럽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접근을 더 강화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1]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EU가 전통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해온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나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WTO가 출범하여 2001년에 새롭게 시작한 도하개발어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2006년 7월 제네바 통상장관회담에서 조기 타결에 실패하고 향후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길을 잃으면서 다자간 무역자유

1)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What do we mean by external aspects of competitiveness? We mean ensuring that competitive European companies, supported by the right internal policies must be enabled to gain access to, and operate securely in world markets. That is our agenda." Speech by then Trade Commissioner Peter Mandelson, Churchill Lecture, Berlin, 18 September 2006. Corporate Europe Observatory(2008), p. 1.

화에 집중해온 EU의 조급증은 한계에 다다랐다.

2006년 10월 집행위원회 통상총국(DG Trade)이 발표한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2]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본격적인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EU 통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Global Europe Initiative에서 제시된 신통상정책[3]은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특히 양자간 FTA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의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제거, 해외 서비스 시장 공략,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규범 및 기준의 확산을 EU 통상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통상정책이 역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역내경제정책과의 조응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2006년에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은 통상정책의 목표를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와 역내경제 성장에 기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양자간 FTA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 과거 유럽의 주변국들이나 식민지 경험으로 연결되어있는 국가들과 탈식민지 이후 새로운 관계 설정 및 개발협력 차원에 머물러 있던 EU의 FTA정책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5] EU의 신통상정책은 그 후 2010년과 2015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각각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EU체제의 발전을 적절히

---

2) European Commission(2006a).

3) Global Europe Initiative가 EU 통상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큰 방향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EU의 신통상정책이라고 명명한다. EU 측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통상(투자)정책을 New Trade (and Investment) Policy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2009년 리스본조약 이후 투자분야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보자면 2010년 이후부터는 신통상투자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과거의 관례에 따라 신통상정책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다.

4) EU는 이를 차세대 FTA(New Generation FTA)라고 부르고 있다. 차세대 FTA에서는 과거에 강조되었던 외교・안보적 동기가 현저히 약화된 가운데, 경제통상적 관점이 강조되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개방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협상 대상국별로 맞춤형 FTA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5) 신통상정책 발표 이전에 발효된 FTA로서는 멕시코(2000년), 칠레(2003년), 남아공(2004년) 등이 있으며 EU는 구 식민지 국가 및 지중해 연안 국가, 러시아 및 CIS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ement) 및 연대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맺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후 EU가 투자분야의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2010년판은 투자분야가 새롭게 강조되어 신통상투자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 발표된 신통상정책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의 극대화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해외서비스 시장진출 및 투자확대 등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 공유 확대 등을 세부정책 내용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통상로드맵[6]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서든지 양자간 FTA전략은 EU의 신통상정책의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U는 2006년 신통상정책 발표 이후 차세대 FTA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하여 2011년 7월부터 발효하고 있으며,[7] 그 외 싱가포르와 FTA를 서명하였고, 캐나다 및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안데스 공동체(ANDEAN)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으로 과거 176개 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개혁하여, 2014년 1월부터 적용대상 국가를 92개국으로 축소하고 제외된 국가 중 일부와는 FTA 또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식으로 특혜무역관계를 전환할 예정인바, FTA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6) 2013년 6월에 발표된 신통상로드맵의 주요 정책 기조는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상대국과 상생하는 통상전략 수립,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협업・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3), 「신통상로드맵」,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8.do?brf_code_v=8#header(검색일: 2016. 11. 11).

7)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하였으며, EU의 배타적 권한 밖에 있던 문화협력의 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조항을 포함한 전체 발효는 2015년 12월 13일부터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5. 12. 14). 「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보도참고자료, http://fta.go.kr/eu/paper/1/(검색일: 2016. 11. 1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정책의 목표가 새롭게 중요성을 부여받은 양자간 FTA전략에서 어떻게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통상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통상정책에서 다뤄지는 수단들이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EU 규범의 확산과 보편성 획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통상정책이 역내 경제의 고용창출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상정책이 최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가치사슬의 문제를 고려하여, 역내 가치사슬의 확산과 역외 글로벌가치사슬의 연계성 증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른 양자간 FTA 전략이 과연 이러한 신통상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첫째, EU는 역내에서는 규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역외에서는 규범・표준을 선점한 후 대외통상정책을 통해 상대국에 수용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EU의 FTA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U는 과거 역내 통합과정에서 역내 회원국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규제의 상호인정과 조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EU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FTA를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통상규범과 국제 표준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확산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FTA 협상 시 전략적, 규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재권, 노동기준 준수,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 연구와 차별화하여 EU가 FTA를 통해 추구해온 규범제정(rule-making)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EU는 국제규범의 제정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EU가 주도한 국제규범을 WTO나 양자

간 FT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이에 따른 국내 고실업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EU가 통상정책의 목표를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고용에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FTA 전략에서도 이러한 고려사항이 대폭적으로 정비되고 강화되었다. 그런데 FTA 전략이 국내 고용창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FTA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며 협상의 결과가 과연 역내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체제가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TA 전략에서 이러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 FTA에서 역내 고용창출에 관해 어떠한 고려를 해왔는지 점검해볼 것이다.

셋째, 통상정책의 주안점이 점차 전통적인 시장접근에서 기업의 GVC 확대와 해외 서비스시장 진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FTA 전략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점차 확대되는 GVC 체제에서는 글로벌시장에서의 고기술, 고가치 산업에 대하여 관련 국가간 특화와 가치배분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EU를 둘러싼 가치사슬이 EU 역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FTA 전략에서 역내외 가치사슬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FTA 전략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의 통상정책을 이해한다는 당위론적 중요성도 있겠지만, TPP, TTIP, RCEP 등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선진국 규제의 선제적인 수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규범의 전개 방향을 이해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EU FTA 개정이나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의 對유럽 특혜무역 관계의 재설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통상정책이 국내경제 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바, 이 연구는 대외개방정책이 고용시장에 주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이행하며, 성과 및 영향

을 파악하는 엄밀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EU의 FTA 전략 및 추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3~5년 후 EU의 FTA 네트워크를 미리 예상하여 우리정부의 대EU 통상전략 및 포괄적 FTA 운영전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신통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신통상정책의 주요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EU 신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FTA 전략에서 구현되는 세 가지 이슈, 즉 EU 규범의 확산, 국내고용과의 연계성, 그리고 GVC 활용의 극대화를 추출해낸다. 3장에서는 FTA를 통하여 EU가 EU 규범의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4장은 신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고용과 관련하여 FTA의 영향평가 체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 사례를 논의한다. 5장은 EU 역내에서 GVC의 심화과정과 역외 GVC 강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6장은 요약과 맺음말이다.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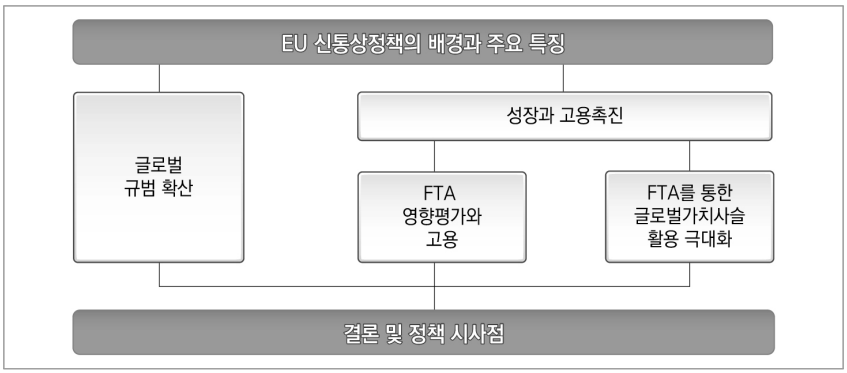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3. 소결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15년 10월 '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라는 제목의 신통상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EU 집행위는 글로벌 경제 및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약 4~5년 주기로 새로운 통상투자전략을 수립해왔는데, EU 집행위가 발표하는 통상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인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당면한 도전에 대한 향후 수년간 EU 차원의 대응 계획을 담고 있어 EU의 무역 및 투자정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6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발표된 EU의 주요 통상투자전략에는 글로벌유럽전략(2006), EU 2020 통상전략(2010), 그리고 신통상투자전략(2015)이 있다.

2006년 10월 발표된 글로벌유럽전략(Global Europe Strategy)은 1999년부터 지속되어온 'Lamy doctrine'에 의해 확인된 양자협정의 사실상 중단 기조에서 선회하여 역외국과의 활발한 양자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8]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유럽의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활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WTO 중심의 다자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미국 등 경쟁국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를 체결함에 따라 EU의 시장접근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9] 즉 폭넓은 시장개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무역정책의

8) Gstohl and Hanf(2004), pp. 733-748.
9) Harrison ed.(2014), p. 25.

역점을 두는 동시에 적극적 FTA를 통한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FTA 대상국의 선정은 ① 시장잠재력(경제규모 및 성장잠재력) ② 무역장벽의 수준(관세 및 비관세장벽) ③ 경쟁국과의 협상 추진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인도, ASEAN, 메르코수르(Mercosur), 러시아, 그리고 GCC가 EU의 우선협상 대상국임을 밝혔다.[10] 2008년 협상이 타결된 한·EU FTA는 이러한 전략적 배경에서 EU가 체결한 첫 번째 차세대 무역협정(new generation FTA)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EU가 체결했던 다른 무역협정들보다 포괄적이며, 이후 EU가 추진하는 FTA 협상의 기본 틀로 활용되었다.

EU 집행위는 2006년 발표된 글로벌 유럽전략하에서 적극적 FTA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및 내부적 주요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 새로운 통상정책을 채택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유럽 내에서도 더욱 심각해진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는 보다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The Treaty of Lisbon)에 의해 EU의 통상협정 권한이 강화됨에 따른 구조적 변화 및 새로운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1] 결과적으로 리스본조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EU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무역이 EU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유럽의회의 통상정책 관련 권한이 강화되었다. 2010년 11월 EU는 2010~15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안[12]을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이하 'EU 2020 통상전략')'

10) European Commission(2006a), p. 11.

11) 리스본조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EU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무역이 EU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유럽의회의 통상정책 관련 권한이 강화되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기존에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었던 투자협상권이 EU 집행위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되었으며 서비스, 투자,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등 공동통상정책 분야에서 EU의 배타적 권한이 확대되었다.

12) European Commission(2010d).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EU 집행위가 향후 10년간의 통합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Europe 2020'[13]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전략으로는 ① 적극적 FTA의 지속적 추진 ② 비관세장벽 철폐 및 규제수렴을 위한 협력 강화 ③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U 기업의 접근성 개선 ④ 새로운 해외투자정책 수립 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독조치 강화 등이 있다. 2010년 이후 EU는 이러한 전략하에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무역 상대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FT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특히 2012년 이후 미국 및 일본과 각각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양자협정 추진을 통해 기존의 다자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통상체제 구축에 EU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10월에 발표된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14]은 2010년 수립된 통상정책에 대한 개정안으로 최근 TTIP 등 주요국과의 통상협정을 둘러싼 EU의 무역통상정책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대한 대내외적 논의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EU의 통상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주요 정책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통상투자전략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유럽의 가치(values)가 명시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협상과정의 투명성 강화는 최근 진행되어온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것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높아진 데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① 통상정책 결정 시 대중과의 소통 확대 ② 주요 통상협정에 대한 영향평가 시행 및 공개 범위 확대 ③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 및 일반인의 참여 확대

13) European Commission(2010c).

14) European Commission(2015b).

를 추진하고 있다. 효율성의 원칙은 통상정책을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확대 추진 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 강화, 기 체결 FTA 활용률 개선을 위한 강력한 EU의 권리 집행 방안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무역활성화와 함께 국내적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을 통한 유럽의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은 높은 수준의 규제표준을 확보하는 과정에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협정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장(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에 반부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를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에 대한 유럽 내의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투자협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발전시켜 다자체제의 국제투자법원(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 채택된 신통상투자전략의 추진 배경에는 당면한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인식과 대응전략이 잘 드러나 있다. 신통상투자전략의 주요 추진의 배경으로는 ① TTIP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협상의 투명성 강화 요구 ② 고용과 성장 촉진을 위한 GVC와 무역정책의 연계 필요 ③ 양자 mega-FTA 추진을 통한 국제통상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 ④ EU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 체결 FTA의 이행 촉구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최근 EU 집행위가 신통상투자전략을 발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통상정책의 실효성 및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지난 수년간 EU의 FTA 추진 정책을 둘러싼 대

내외적 논란이 미국과의 TTIP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및 일반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협상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함으로써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행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최근에는 협상 중에도 관련 문건의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EU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가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기존에 EU가 역외 국가들과 체결한 통상협정이 유럽 내 성장과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EU가 진행하고 있는 통상협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세계 통상환경의 특성을 통상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GVC가 새로운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의 통상정책에서 GVC 활용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따라 EU의 수출경쟁력 및 고용창출 능력이 무역상대국의 경제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무역상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위한 지원(Aid for Trade)전략을 추진하면서 무역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상질서의 주도권 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EU는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전 세계적 무역협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궁극적 대안이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업지원정책이나 산업보조금과 같은 문제들은 WTO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5] 동시에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슈들, 예컨대 디지털 경제, 규제환경 변화, 비관

15) European Commission(2016d), p. 2.

세장벽 등을 고려해서 WTO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WTO 회원국을 모두 아우르는 다자간 협정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동일한 정책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간에 우선적으로 WTO 체제 안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미국과의 양자협정(TTIP) 체결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 체결 FTA의 이행 촉구를 통해 EU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FTA를 통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16] 이로 인해 FTA가 유럽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기 체결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상대국의 협정 이행이 중요한바 이행 촉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협정의 불이행과 관련한 양측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WTO 등 국제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이상의 EU의 통상전략 변화를 통해 나타난 FTA 추진전략의 주요 특징은 크게 ①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FTA의 외연확대 ② FTA를 통한 성장 및 고용확대 추진, 그리고 ③ FTA를 통한 유럽표준의 글로벌 규범화로 요약된다.

16) European Commission(2015b), p. 15.

EU는 WTO를 통한 다자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본격적으로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FTA를 통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 차별적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FTA의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무역 활성화를 통해 역내 고용 및 성장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 과정에서 구축되어온 유럽표준화정책을 비회원국과의 무역협정에 적용함으로써 유럽표준의 글로벌 규범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2006년 채택한 글로벌 유럽 전략은 역외국과 적극적 FTA를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략하에 EU는 FTA의 외연 확장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와 동유럽, ASEAN,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U가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특히 통상규범 측면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WTO 체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통상규범 측면에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미국과의 FTA도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규제 조화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범질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도국과의 FTA 협상 역시 무역자유화의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상대국의 경제상황 및 개발 정도에 따라 차별적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협상이 완료 또는 서명된 중남미지역 국가들(페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과의 FTA는 기존의 일반특혜관세(GSP)를 FT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양허수준 및 포괄범위가 한・EU FTA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17]

17) 강유덕, 양효은(2015), p. 4.

표 2-1. EU의 FTA 추진 현황(2016년 10월)

지역	국가	추진현황	주요사항
아시아	ASEAN	• 2007년 7월 협상 개시 • 2009년 3월 7차 협상에서 협상 잠정 중단 합의 • 2009년 12월 EU의 양자협정 추진 계획 발표	• 양자협정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싱가포르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 협상으로 변경 • 2010년 3월 협상 시작, 2012년 12월 타결 • 2014년 10월 최종 협상 완료	• 2015년 7월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협정체결 권한 요청
	말레이시아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10년 10월 협상 시작 •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이후 협상 부진	• 2013년 5월 말레이시아 총선 이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에 불구하고 성과 부진
	베트남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12년 6월 협상 개시 •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5년 12월 최종 협상 완료	• 투자 chapter에 ISDS 조항 대신 투자법원제도 포함 • 2017년 초 비준; 2018년 초 발효 예정
	태국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13년 3월 협상 개시 • 2014년 4월까지 4차 협상 진행 후 잠정 보류	• 협상 일정 없음
	필리핀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15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 2016년 5월 1차 협상 완료	• 향후 지역협정을 위해 다른 ASEAN 회원국과 유사한 협상수준 추구
	일본	•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 승인 • 2013년 4월 협상 시작 • 2016년 9월 17차 협상 완료	• 현재까지 협상이 완료된 장(章)은 없음
	인도네시아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16년 7월 EU 위원회의 협상 개시 승인 • 2016년 9월 사전 협의회의 개최	-
	인도	• 2007년 6월 협상 개시 • 2013년 12차 협상 이후 잠정 보류 • 2016년 1월 협상 재개 가능성 타진 시작 • 2016년 3월 EU · 인도 정상회의에서 EC Juncker 위원장의 협상 재개 의지 표명	• 상품시장 개방, 서비스, 정부조달, 노동환경 관련 협상 수준 및 쟁점 조율 필요
	미얀마	• 2014년 3월 양자협정 추진에 합의 • 2015년 2월 이후 3차 협상 완료 • 다음 협상 일정 미정	•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
북미	캐나다	• 2009년 5월 협상 개시 • 2014년 10월 협상 최종 완료 • 2016년 10월 최종 서명	• 투자 chapter에 ISDS 조항 대신 새로운 투자법원제도 포함

표 2-1. 계속

지역	국가	추진현황	주요사항
북미	미국	• 2013년 7월 협상 개시 • 2016년 10월 15차 협상 완료	• 시장접근, 규제이슈, 통상규범의 3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 추진
중남미	안데스공동체(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 2010년 2월 협상 완료 • 2012년 6월 서명(페루, 콜롬비아) • 2012년 12월 유럽의회 비준 완료 • 2014년 1월 에콰도르와 협상 재개, 7월 협상 타결 • 2016년 2월 볼리비아 포함 결정	• 2013년 3월(페루), 8월(콜롬비아) 잠정 발효 • 2014년 12월 에콰도르와의 협정 가서명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6개국) • 2010년 5월 협상완료, 2012년 6월 서명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 완료	• 2013년 8월(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10월(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12월(과테말라) 잠정 발효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 2010년 5월 협상 재개 • 2012년 9월 9차 협상 진행 • 2015년 6월 장관급 회의에서 12월까지 양측의 시장개방 제안서 교환 합의 • 2016년 5월과 10월 협상에서 시장개방 제안서 교환	• 2017년 3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다음 협상 개최 예정
북아프리카·중동	Euro-Med	• 1995~2002년 사이 제휴 협정 체결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와 개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	• 2013년 3월 모로코와 FTA 협상 개시 후 4차례 협상 진행
	GCC*	• 2008년 협상 중지 •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정의 전반적 내용에서 진전이 이뤄짐	• 향후 일정 미정
동유럽	우크라이나	• 2011년 제휴협정의 일부로 FTA 협상 완료 • 2012년 7월 가서명, 2014년 6월 협상 서명 • 2016년 1월 잠정 발효	• FTA 포함 제휴 협정 추진 중
	조지아	• 2014년 6월 협상 서명 • 2014년 9월 잠정 발효	• FTA 포함 제휴 협정 추진 중
	몰도바	• 2012년 2월 협상 시작 • 2014년 6월 협상 서명, 9월 잠정 발효	• FTA 포함 제휴 협정 추진 중

주: Gulf Cooperation Council.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f), pp. 2-14 재구성.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전략은 FTA를 통한 무역비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회원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총 역외무역의 2/3가 FTA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그림 2-1. FTA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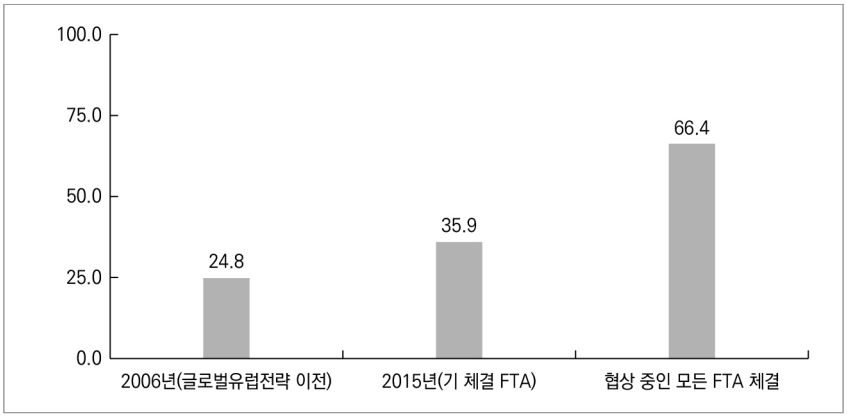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b), p. 7.

는 EU GDP의 2.2%에 달하는 2,75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EU 전체 고용인력의 1%에 해당하는 2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8)]

그림 2-2. 수출입 및 투자에서 FTA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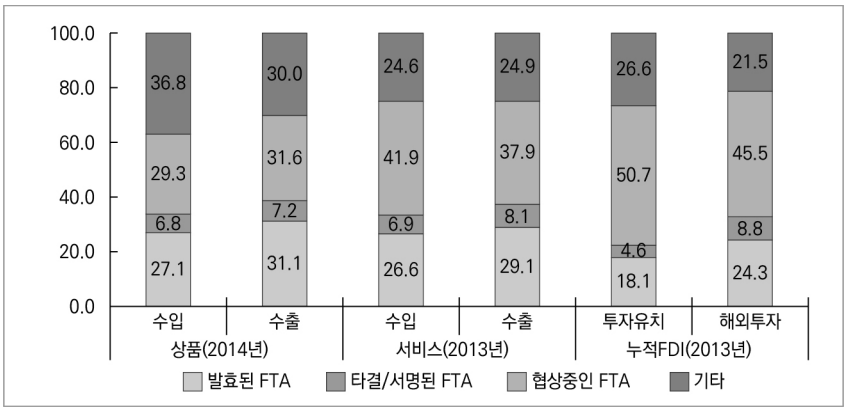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b), p. 10 재구성.

18) European Commission(2015e).

최근 EU는 그동안 체결된 다수의 FTA를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 체결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신통상투자전략(2015)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 발효 첫해 관세율 감소로 인한 혜택은 EU 총 수출의 40%에 불과했으나 현재 활용률(preference utilization rate)은 2/3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여전히 활용률 격차가 심하고,[19] 한국의 경우 활용률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체결된 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 또한 신흥시장에 진출한 EU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WTO 분쟁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럽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6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6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역외수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EU 총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U는 기 체결 협정의 활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협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포함할 것을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글로벌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숙련) 노동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19) 한・EU FTA 활용률은 키프로스, 라트비아, 오스트리아에서는 80%인 반면 에스토니아, 몰타, 불가리아에서는 40% 미만으로 나타나 회원국별로 격차가 큼(European Commission 2015b).

20) European Commission(2015b), p. 15.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EU가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통상규범 설립에서 유럽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WTO 체제하 다자간 무역협상의 정체 이후, 세계무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EU는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유럽의 가치와 표준화된 규범을 상대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했다. 리스본조약에 따른 EU 집행위의 협상권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 차원의 핵심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21] 특히 리스본조약에 따라 EU의 무역정책은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무역정책과 대외정책의 연계성 강화는 새로운 FTA 협상에서 EU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22] 이러한 맥락에서 Gstohl and Hanf(2014, p. 735)는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나타난 차세대 무역협정(new generation agreements)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① EU의 기본가치를 무역 상대국에 수출함으로서 비EU 시민의 기본권 보호 ② EU의 기본가치를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대외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EU 시민의 권리 보호 ③ 통상정책을 넓은 범위의 대내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정 조정을 들고 있다. 실제로 EU가 체결해온 FTA 조항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지역안정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규제조화 및 강력한 무역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FTA를 대상국 또는 지역과의 전반적인 관계 정립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나타낸다.[23] 동시에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을 확립하고 경쟁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21) Harrison ed.(2014).
22) Horng(2012), p. 305.
23) *Ibid.*, pp. 301-308.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유럽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FTA를 통한 지재권, 정부조달, 보조금, 경쟁 등을 포괄하는 공정거래규범의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24]

결론적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서비스, 투자,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등 규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화 전략은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세대 FTA의 핵심 전략이다. 글로벌 통상규범은 투자환경의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U는 활발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상대국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EU가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무역질서 수립을 주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25]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유럽 내 비판이 고조되면서, 유럽의회는 TTIP에 ISDS가 포함될 경우 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광범위한 의견수렴(consultation) 과정을 거쳐 기존의 ISDS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CS)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아닌 양 당사국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로 구성된 상설 법원의 설립을 통해 기존 투자분쟁해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6] 현재 미국과는 TTIP 협상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이미 협상이 완료된 캐나다와의 FTA(CETA: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는 협상 시 포함되었던 ISDS 관련 조항을 투자법원제도(ICS)로 교체하였다. 또한 EU・베트남 FTA에도 ISDS 조항 대신 투자법원의 설립을 채택하였다. 이는 EU가 양자협정을 넘어서 향후 다자체제의 국제투자법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 주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4) *Ibid.*, p. 309.

25) 강유덕, 양효은(2015), p. 6.

26) 양효은(2015), pp. 15~17.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리스본조약 이후 EU의 통상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경쟁력' 향상으로 재설정되었다. 또한 과거 WTO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경제적 이슈들, 예컨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등을 포괄적이고 야심찬 차세대 FTA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27] 고용과 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유럽의 높은 실업률과 성장의 불확실성에 있는데, 가장 근본적 원인은 유럽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에 있다. EU는 향후 10~15년 후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역외에서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유럽 내부의 수요가 매우 저조한 가운데 무역 활성화를 통해 신흥국경제의 높은 수요를 유럽경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성장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신흥시장과 적극적 FTA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2006년 글로벌유럽전략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 신흥국과의 지속적인 FTA 추진으로 더욱

그림 2-3. 지역별 EU 대외무역 비중(2005년)

(단위: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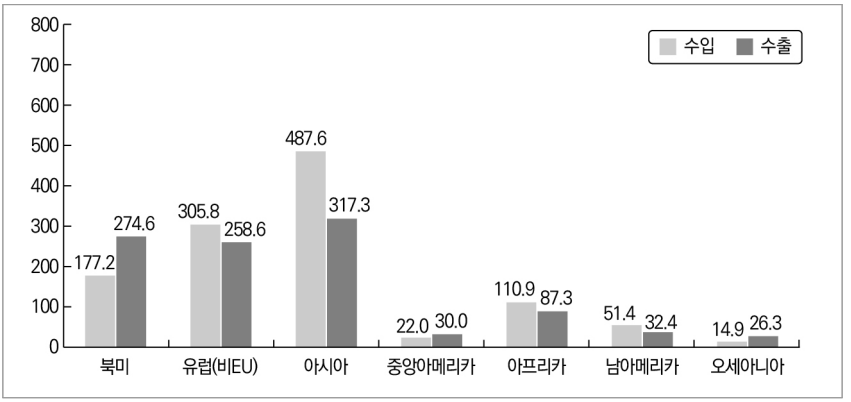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f), p. 1.

27) Gstohl and Hanf(2014), p. 734.

그림 2-4. 지역별 EU 대외무역 비중(2014년)

(단위: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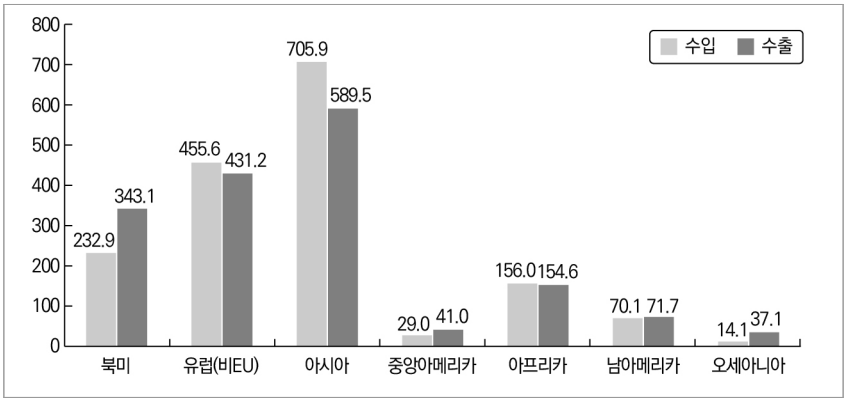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f), p. 1.

강화되고 있다. EU는 글로벌유럽전략에서 아시아 신흥시장과의 양자무역협정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경제적 요건은 시장잠재력이 될 것이며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8]

글로벌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성장 전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는 무역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 FTA와 무역추진 정책이 유럽 내 고용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실제로 무역이 유럽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10~15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29] 2015년도 기준으로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EU 역외수출과 관련되어있으며 이는 15

28) European Commission(2006c), p. 4.

29) 1995년에서 2011년 사이 역외수출과 연계된 일자리 수는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uropean Commission(2015d), p. 4.

그림 2-5. EU 회원국별 역외수출과 연계된 역내 일자리 수 현황(2011년 기준)

(단위: 1,0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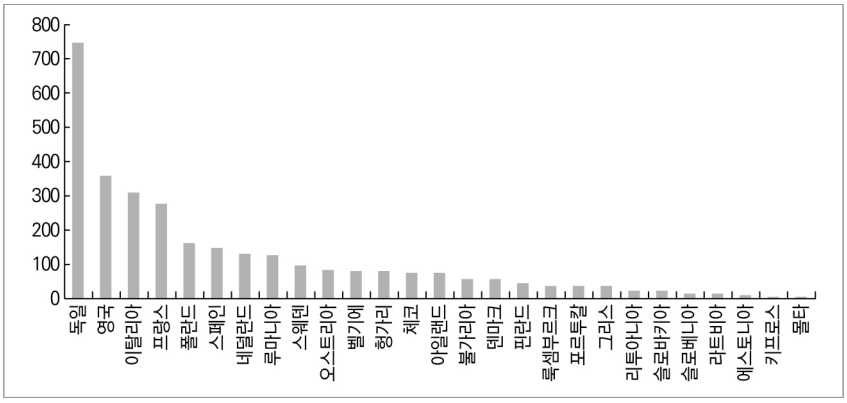

주: 독일의 역외수출과 연계된 유럽 내 일자리는 약 750만 개이며, 이 중 약 15%가 대중국 수출과 연계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d), p. 14.

년 전과 비교할 때 2/3가량 증가한 수치이다.[30] 이러한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무역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신흥시장국과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유입하는 한편 역내 기업들의 대외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유럽경제의 낮은 성장률과 불확실한 전망은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자원으로서 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정을 완결하는 것을 향후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31] EU가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의 분석에 기초해 수출과 고용, 그리고 성장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수출과 연계된 일자리가 기술의 숙련도나 보상 측면에서 역내 일자리의 평균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외무역에 연관된 기업이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더 나은 일자리를 제

30) European Commission(2015b), p. 8.
31) European Commission(2015d), p. 2.

그림 2-6. EU 회원국별 역외수출과 연계된 역내고용 수준 현황(2009년)

(단위: 일자리/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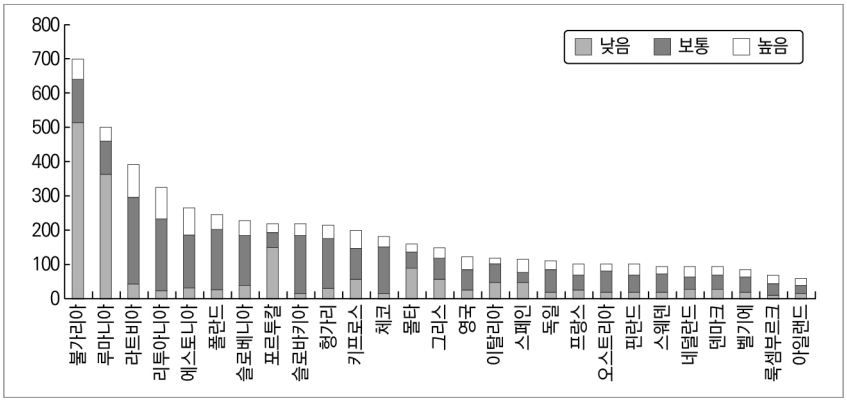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d), p. 12.

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단일시장의 효과적 운영이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로 인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확대는 유럽의 수출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가 역외 국가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온 EU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EU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EU 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EU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가치 및 정책을 표명하는 한편

EU 내부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적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10월에 발표된 신통상투자전략은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일부 회원국이 협상내용 공개 요구 등을 강력히 표출하면서 이에 대한 EU 집행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비전제시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2006년 이후 발표되었던 통상전략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구체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동안 EU가 글로벌 유럽전략하에 체결해온 다수의 FTA가 역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EU는 2006년 이후 신통상정책하에서 FTA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대외적으로는 유럽표준을 글로벌 규범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고용 및 성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FTA 추진 전략을 견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럽 내의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유럽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WTO를 포함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력이 정체된 가운데 다수의 양자 FTA를 통해 무역 규범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의 표준을 글로벌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FTA 영향평가를 통해 FTA 체결이 역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중에 홍보함으로써 FTA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대외무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GVC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 전략

4. 소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EU는 전통적으로 역내에서 통합 및 수렴이 이루어진 규범을 GATT/WTO 다자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규범으로 채택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EU는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된 역내시장의 통합에 주력하였으며, 2001년에 출범한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통한 글로벌 규범 설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WTO 출범 후 최초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갈수록 추진동력을 잃어 EU가 DDA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설정하려는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게다가 글로벌 규범 경쟁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통상정책 방향을 적극적인 FTA로 선회하였다.

EU가 대외통상정책에서 글로벌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2006년 10월 글로벌유럽전략(Global Europe Initiative) 발표에 의한 전략 변화이다.[32] 역외국과의 FTA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EU의 통상정책 방향이 상기 전략에 의해 FTA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규범 확대로 전환되었다. 2004년과 2007년의 EU 확대에서 신규 회원국에 EU 체제(aquis communautaire) 수용을 강제한 반면, 2004년에 발효된 EU・칠레 FTA에서는 규범 이슈를 비롯한 특정 부문이 제외되는 개방 수준이 낮은 FTA 협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유럽전략 이후에 추진된 한・EU FTA에서는 국내외 규범 이슈까지 포괄하는 수준 높은 FTA로 체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중기 EU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포함된 신통상정책보고서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의 발표이다.[33] 이 보고서에는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 접

32) European Commission(2006a).

33) European Commission(2010b).

근성 개선 이외에도 제3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지식재산권 강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규제 조화를 비롯한 구체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DDA는 WTO가 세계교역의 기본질서라는 점과 함께 다자간 협상의 상징성과 협상의 포괄성 등으로 여전히 EU의 대외통상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DDA 협상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통상에서 규범의 제정자(rule-making)로서의 위상 유지를 위해 EU는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DDA 이외에 다른 장기적인 통상전략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FTA의 확산으로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국내외 규범, 지식재산권 등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으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EU집행위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2010년 3월 발표한 'Europe 2020 전략'[34]에도 환경산업과 고기술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환경산업 부문에서 개방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거대 교역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규범, 환경 등의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다. 결국 EU 집행위는 Europe 2020 전략에 따른 2010~15년 동안의 신통상정책을 11월에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규범 부문의 수렴 및 협력 추구를 강화해나갈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국제기준을 무역상대국이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검사나 인증 제도를 강요할 경우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독조치의 강화 의지도 동시에 표명하였는데,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EU는 제3국과의 FTA 체제 내에서 지재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2013년 초 EU의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34) European Commission(2010c).

다. 이러한 거대 선진권과의 FTA는 EU와 밀접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여타 제3국의 통상정책은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라 명명된 EU・미 FTA는 2013년 2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협상을 공식화하였다. 당시 발표된 양측의 고위 작업반 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시장접근, 규제 이슈와 비관세장벽, 국제통상 규율 등으로 협정내용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글로벌 규범 설정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EU・일 FTA는 2013년 초 협상 개시 이후, 2016년 9월 30일 현재 17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며, EU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 시장개방, 지재권 강화 등의 촉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메가 FTA를 비롯한 최근 국제통상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35]의 발표이다. '신통상투자전략'은 효과성 및 투명성과 함께 유럽의 가치를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 지속가능 발전, 부패와의 전쟁, 공정 및 윤리무역(fair and ethical trade) 등을 포괄하는 유럽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유럽의 사회적, 규제적 모델을 보호함으로써 유럽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통상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EU는 '신통상투자전략'을 통해 세계무역의 원칙을 제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WTO의 재활성화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부상과 같은 최근 트렌드를 고려할 때, 양자협정 혹은 지역협정을 통한 대응책보다는 글로벌한 통상원칙이 더욱 필요하며 이는 WTO에서만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35) 상기 전략은 '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2010년 신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통상투자정책'으로 구분한다. European Commission(2015b).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EU는 환경, 지재권, 노동 등 EU의 주요 가치 보존을 대외통상정책의 핵심적인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EU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TTIP 협상, 일본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규제 권한 확보를 통한 환경 및 노동 등의 가치보존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EU는 TTIP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투자자・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인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의 창설을 제안, 이를 글로벌 규범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 관련 주요 이슈를 주도해오고 있는 EU는 환경보전의 목적과 함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와 함께 EU 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한 주요 도입 목적 중 하나이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의해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되지 않는 연 1톤 이상의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EU는 환경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 규정, 수은사용 규제, 승용차와 상용차 및 대형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항공 부문 및 해상운송 부문 온실가스 규제,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 규제, 포장재 폐기물 관리, 에코라벨링 제도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무역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의 FTA에서 지재권 관련 조항은 대체로 WTO TRIPs[36]를 기본으로 여기에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 기간

36) 1986~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은 다자간 무역법 체제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지재권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등을 비롯하여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TRIPs Plus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조약,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이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지재권 이슈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FTA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FTA의 확산으로 무역장벽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최근 메가 FTA 논의 전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이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함께 위생 및 식물위행 조치(SPS), 수량제한, 통관절차, 정부조달,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금융,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TBT와 관련하여 1995년에 발효된 WTO TBT 협정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한 조치를 제외하고 회원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무역 흐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기술 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WTO TBT 협정은 회원국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 혹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술규정을 사용할 경우, 국제 표준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EU는 회원국간 상이한 기술규정 및 표준을 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내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합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이를 'EU 차원의 기술적 조화(EU approach

---

서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축소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to technical harmonization)'로 명명하였다.

EU의 역내 규제 수렴 과정은 EU 확대 및 확대된 역내시장의 통합 심화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규제 수렴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는 기술규격을 서로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전통적인 규제 수렴 전략으로 EU의 출범과 확대 및 심화의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추진되었다. 2단계는 1985년 필수 요건에 대해서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표준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 수렴 전략의 도입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1989년부터 추진된 EU 역내 수렴된 규제의 국제표준화이다.

1단계의 전통적인 규제 수렴 전략은 EU의 통합 초기에 국가마다 상이한 규정들을 통합할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당시 유럽표준화기구는 지금과는 달리 공적 권위를 통해 표준화를 뒷받침할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한 EU 역내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당시 EU는 기술규격을 조화시키고 해당 기술규격의 적용 대상 제품 목록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조화된 기술규격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제품에 강제로 적용되었다. EU 통합 초기 단계에는 상품의 다양성이 한정되어있었고 규모의 경제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역내규제의 수렴은 조화(harmonization)와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두 가지 방법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상이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하나의 표준에 근거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조화이며, 표준을 일치시키지 않고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상호인정이다. 그런데 1단계의 전통적인 규제 수렴 전략은 적합성 평가절차 혹은 인증서에 대한 공통의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조화와 상호인정이 양립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즉 1단

계 전략은 상호인정에 대한 규정 미비로 기술변화와 상품의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역내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전통적인 규제 수렴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5년 새로운 전략으로 'Council Resolution on the 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이 채택되었다.[37]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규제 수렴 전략은 전기전자제품, 저전압기기, 완구, 기계류, 압력기기, 가스기기, 의료기기, 무선통신단말기기, 승강기, 개인보호장비, 선박 등 다양한 품목군에 따라 규정된 EU 지침에 적용되었다. 각 지침은 관련 제품이 충족해야 할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할 경우 EU 역내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필수요건은 안전, 환경, 보건 등의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공익과 대응해야 할 위험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화된 유럽 표준(harmonized European standards)'[38]에 부합하도록 생산된 제품의 경우 이러한 필수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침에 적용되어 EU 내 표준 조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상기 전략은 필수조건에 규정된 조화를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화된 유럽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2단계 전략은 1단계 전략과는 달리 조화와 상호인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상호인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였다. 필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가 완전하게 구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9년 EU 역내 수렴된 규제의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Council Resolution on the Global Approach to certification

---

37) European Commissio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85Y0604(01)(검색일: 2016. 11. 28).

38) 유럽표준화기구인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이 EU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아 제정한 유럽표준(EN) 중에서 EU 집행위의 공식 요청에 의거하여 채택된 표준을 의미한다.

and testing'이 채택되었다.[39]

이처럼 3단계 전략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적합성 평가를 위한 통일된 틀이 EU 역내에 보급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시행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였고, 이는 결국 유럽표준의 국제표준화 주도로 이어졌다. EU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표준화에 있어 국제적으로 유리한 입지 선점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EU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한 것이었다.

EU는 3단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표준과 국제표준조화를 비엔나협약(Vienna Agreement)과 드레스덴협약(Dresden Agreement)을 거쳐 실천하였다. 유럽표준의 국제표준 채택에 초점을 둔 1991년의 비엔나협약은 원칙적으로 유럽표준화위원회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표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즉 표준 제정 작업이 중복될 경우, ISO에서 표준제정을 하도록 하고 유럽표준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유럽표준안을 ISO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996년 드레스덴협약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간 체결된 것으로 기본 취지는 비엔나협약과 동일하게 역내에서 조화된 유럽표준의 국제화 추구였다.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EU FTA 사례

EU가 글로벌 규범을 확대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EU FTA이다. EU는 역내표준 및 규범을 상대국과 일치시키는 과정에

39)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776/attachments/1/.../pdf(검색일: 2016. 11. 28).

초점을 맞춰 주로 FTA 협상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이행평가가 가능한 EU의 기체결 FTA 가운데 한・EU FTA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에 EU가 지향하는 절차규제하에서 역내규범과의 표준화가 한・EU FTA 협정문에 잘 명시되어있다.

한・EU FTA 협정문 제2장의 비관세장벽 부속서에는 세부적인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된 규정이 명시되어있다.[40] 이 가운데 표준과 관련하여 '부속서 2-나'에는 전자제품, '부속서 2-다'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각각 명시되어있다. 먼저 전자제품 관련 한・EU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유・무선통신기기를 포함하여 한국과 EU 양측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에 관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모두 명시되어있다. '부속서 2'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통신연합(ITU)을 국제표준 제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이 3개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이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명목적으로는 한・EU 양측이 모두 국제표준에 기초한 표준의 사용과 조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EU의 표준이 이미 거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EU는 한・EU FTA를 통해 유럽표준을 국제표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부속서 2-다'의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조항에는 양측이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 혹은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 기준을 FTA 발효 이후 5년 이내에 조화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을 예로 들면, 한국 측은 당시 32개 기준의 동등성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발효 5년 이내에 나머지 2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반면 EU 측은 안전

40) 외교통상부(2010),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기준 대부분이 UN ECE와 이미 조화를 이룬 상태였으며, 발효 이후 충돌 시 상용차의 운전석 앞부분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용자동차 외부돌출물 기준 하나만 남은 상태였다. 이는 EU가 FTA를 통해 한국이 UN ECE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여 유럽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한・EU FTA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EU FTA에는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발효 이후 EU 측은 즉시 도입, 한국 측은 3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5년 이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SDoC는 제품이 수출 상대국 기준에 맞게 생산되었는지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 스스로 확인, 선언하는 방식으로 EU 역내에 이미 확립되어있는 제도였다. 결국 EU는 글로벌 규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한・EU FTA를 통해 EU에 확립되어있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한국과 조화시킨 것이다.

이 밖에도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부문에는 EU의 노동과 환경 관련 글로벌 규범 전략이 명시되어있는데, 주로 관련 영역의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ILO 핵심 협약 준수 및 해결 메카니즘 수립을 위해 ILO 핵심 8개 협약 중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 4개 항목의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다자간 환경협정(MEA) 의무 이행의 원칙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 이행 공약까지 포괄하고 있다.

나. EU・캐나다 FTA(CETA)

2010년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권과의 FTA에 대한 별다른 고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전후로 EU의 선진권과의 FTA 논의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영국 총리

등이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이었으며, 유보적 입장이던 프랑스도 문화산업에 대한 제외를 조건으로 수용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유럽의회는 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일본, 미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협상이 공식화되기 전에 FTA 지지 결의문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EU가 선진권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에는 재정위기 이후 유럽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과 함께 글로벌 통상 규범, 기준 및 표준 설정에서 EU의 비교 우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세계표준이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하였고,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FTA는 글로벌 규범 재정립을 통해 EU 규범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EU와 미국 간 FTA인 TTIP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EU・캐나다 FTA인 CETA(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협상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 9월 양측은 협상 완료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노동과 환경, 소비자 권익, 식품 위생 측면에서 유럽의 가치를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일부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협상 완료 이후에도 오랫동안 표류하던 CETA는 지난 2016년 9월 23일 EU 집행위원회가 재협상 불가 방침과 협상 완료를 재확인함으로써 양측의 최종 서명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산되었다. 결국 EU와 캐나다는 지난 10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CETA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내년 잠정 발효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28개 회원국에서 모두 비준을 완료하고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에서 의회가 CETA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청원운동이 전개되는 등 28개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EU FTA 이후 EU는 CETA를 통해 역내에서 표준화된 국제 규범을 처음으로 대서양 너머 선진국인 캐나다에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NAFTA에 기초한 캐나다 규범과의 수렴이 이루어졌다. 캐나다의 규범은 정부

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자율적인 성향이 강한 NAFTA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41] 소비자 권익을 예로 들면 캐나다는 심각한 시장 실패가 야기되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상향식(bottom-up)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EU는 전술한 역내표준화 과정을 거쳐 국제화되고 EU 집행위를 통해 집중화된 하향식(top-down)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규제 조화가 CETA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EU 측 시스템에 캐나다 시스템을 얼마나 근접시키는가가 협상의 주요 근간이 되었다. 이는 곧 EU의 글로벌 규범 확대 전략이 CETA에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많았던 노동자 권익보호, 환경, 식품위생 및 유전자 조작,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서 이를 보환하기 위한 많은 예외 조항들이 도입되었지만, 이 또한 EU 측 규범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및 경쟁적 규제 도입이 외국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EU는 CETA를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TTIP 전략

EU의 글로벌 규범 전략은 EU・미 FTA인 TTIP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TTIP을 통한 EU의 핵심 목표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이며, 특히 양측간 규제의 수렴(regulatory convergence)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는 장기적으로 TTIP에서의 합의 내용을 글로벌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TTIP에서 양측은 비관세장벽 중 특히 각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및 관련제도를 무역에서 주요 장벽으

41) Krstic(2011), pp. 6-7.

표 3-1. 미 · EU FTA(TTIP)의 주요 협상 일정 및 내용

일시	내용
2011년 11월 28일	미 · 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 구성 지시
2012년 2월 22일	미 상원, 미 · EU FTA 추진 찬성 의사 표명
6월 19일	양측 고위급 작업반, 중간보고서 발표 • 미 · EU 간 포괄적 무역 · 투자 협정(이하 미 · EU FTA로 지칭) 필요 결론 도출, 이 무역협정에 관세, 규제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포함 권고 • 미 · EU가 각각 체결한 제3국과의 FTA 조율,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 제시 제안
10월 23일	유럽의회, 미 · EU FTA 추진 찬성 의사 표명 • 유럽의회,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 추진하도록 EU 집행위에 협상 위임권 승인
2013년 2월 8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2월 11일	양측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3대 분야로 ① 시장접근 ② 규제이슈 및 비관세장벽 ③ 국제통상 규율 및 차세대 협력 제시 • ①은 통상적 FTA와 유사하지만, ②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 높은 WTO/SPS plus와 WTO/TBT plus 포함 강조 • ③은 TTIP에서 합의된 내용을 글로벌화, 제3국과의 FTA 조율, 이와 함께 다자무역체제 정비에 기여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
2월 12일	• 오바마 미 대통령,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통해 EU와의 FTA 협상 출범 공식화
2월 13일	•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 대통령 공동성명 발표, FTA 협상 시작 공식화
1차 협상: 7월 8~12일	• 주요 협상 분야 선정: 농산물,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원자재, 규제, 위생/검역, 서비스, 지재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 및 교역 촉진
2차 협상: 11월 11~15일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원자재 규제이슈 등 논의 • 투자: 투자자유화/보호 협의 • 서비스: 국경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협의, 특히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논의 • 규제: 기술장벽에 대한 규제 일관성 및 양측의 규제조화(양립성) 강화의 필요 분야* 협의 *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물질, 살충제,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 에너지/원자재: 양측이 직면한 에너지/원자재 문제 공동 대응
3차 협상: 12월 16~20일	• 비관세 장벽(각종 규제 및 안전기준) 조율 및 공통 기준 마련

표 3-1. 계속

일시	내용
4차 협상: 2014년 3월 10~14일	3대 분야 관련 지속적인 협상 • 시장접근: 관세(offer 교환), 서비스, 공공조달(offer 교환방식 논의)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 일관성 및 양립성, TBT(상호 제출 초안 논의), SPS(초안 작성 배경 논의) • 통상규범: 노동 ·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 측 TTIP에 포함 희망),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5차 협상 5월 19~23일	관세,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관한 논의, 그중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적 차이 해소에 집중 • [규제이슈] 규제의 호환성 촉진 위한 논의 집중. 특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ICT, 자동차 등에서 양측 규제의 호환성 인정 방향으로 논의 진행 중
6차 협상 7월 14~18일	• [시장접근] 서비스 양허 관련 양자간 양허안 교환 및 상세 논의, 공공조달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 등 모든 단계의 정부 기관에 내국민 대우 적용, 실질적인 접근 개선 달성 노력 • [규제분야] 수평적 분야의 표준, 적합성 평가 및 SPS 조치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담당자간 긴밀한 협력 지속 방안 논의. 9개의 구체적인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화학물질, 엔지니어링, ICT, 직물, 화장품 등)별로 논의 진행 • [기타] 분쟁해결 분야에서 통합협정문에 기초한 양측 입장 차이 축소 협상 진행, 중소기업 챕터 및 무역원활화 챕터의 경우, 통합협정문 마무리 작업 돌입, 지속가능 발전의 경우 협정문에 양자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사전 논의 진행
7차 협상 9월 29일 ~10월 3일	• [규제분야] 규제수렴, TBT, SPS 등 수평적 규율 포함한 의약품, 자동차, 화학제품, 엔지니어링 등 구체 분야 규범 집중 논의 - 잠재적 이익이 가장 큰 분야인 동시에 가장 협상이 어려운 분야,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시. ① 공공정책 수준을 낮추지 않는 표준 ② 규범 협력을 통한 선도적 역할이라는 전략적 차원 ③ 규범 호환성 • [규칙분야] 에너지/자원, 통관/무역 원활화, 지재권 및 중소기업 등 4개 분야 규칙 논의 • [서비스] 양허안 교환, 양측 양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집중
8차 협상 2015년 2월 6일	• 투자보호 분야 제외 거의 전 분야 협상 진행, 시장접근, 규범 이슈, 규칙 분야 등 3대 분야 중심 • 양측 수석대표 기자회견, 2015년 중 진전 도출 위해 보다 밀도 있는 협상 진행 계획 발표 • [시장접근] 상품관세, 서비스, 공공조달 등 세 분야 시장접근 개선 논의가 처음으로 모두 진행 • [규제이슈] 수평적 분야 논의 및 분야별(화학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의약품, 직물, 엔지니어링 등) 규제 협력 논의 진행: 환경, 소비자 보호, 안전 등 공익과 관련 EU의 현 규범 수준을 낮추는 양측간 협의는 없음을 강조 • [규칙이슈] 지속가능 발전, 분쟁해결제도, 원산지규정, 중소기업 분야 등 기타 규칙 분야 논의 진행. 중소기업 정보접근 개선 요청, 불필요한 이중 부담 경감 등 논의

표 3-1. 계속

일시	내용
9차 협상 4월 20~24일	• [시장접근] 관세, 농산품, 상품, 공공조달 부문 논의, 서비스 부문 협상은 다음으로 연기 - 세부 항목별 관세 양허안 점검 • [규제이슈] 모든 수평적 분야(SPS, TBT, 규제일관성 등) 논의 진행. 규제협력 부문의 수정 초안 제출 • [규칙이슈] 지속가능개발(고용 및 환경) 제외 전 분야 논의, 관세/무역 원활화, 에너지/원자재, 국가간 분쟁해결 등 분야 진전
10차 협상 7월 13~17일	• 유럽의회, 10차 협상전 TTIP에 대한 지지성명서 통과(7. 8, 찬성: 436, 반대: 241), 미의회는 6월 무역촉진권한 통과(6. 24) - 유럽의회의 성명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표명 •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상품, 농산품 시장접근 양허안(text) 논의 • [규제이슈] 규제협력 및 일관성, TBT, SPS 외 9개 분야 논의 - 9개 분야: 자동차, 화학,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 농약 • [규칙이슈] 지속가능개발(고용 및 환경)과 투자 부문 제외 전 영역 논의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 (검색일: 2015. 10. 7), 재인용: 강유덕, 양효은(2015), pp. 11~13.

로 인식하여 기술규제, 제품표준, 시험 및 인증 등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주요 협상 이슈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TBT와 함께 표준화와 범 대서양 규제협력 등을 포함한 산업규범과 기준에 관한 내용이 주요 협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EU와 미국 양측은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기관간 수평적 정보교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체결 및 표준화 수립 등을 통해 범대서양 규제협력을 추진해왔으며, TTIP 협상은 이러한 양자간 규제협력 강화・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TBT와 관련하여 양측은 서로 다른 규제로 하여금 각국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평적 규제원칙(Horizontal Principles)'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기존 WTO/TBT를 확대한 'WTO-Plus'를 구성하였다. 즉 수평적 규제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WTO/TBT 협정문에 명시된 규제분야 외에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서비스, 공공조달 등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WTO-Plu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TTIP 협상에서 'WTO-Plus' 내용이 포함된 장의 목적은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과 관련 기준을 정립해나가면서 보다 높은 개방성, 투명성 및 규제간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혹은 비효율적인 검사나 인증 기준을 폐지함과 동시에 양측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신뢰를 구축하며, 적합성 평가와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범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TTIP 협상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접근, 규제이슈(비관세장벽), 통상규범(규칙) 등 3개의 분야로 구분, 24개 장(chapter)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2015년 7월까지 10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협상 초기 조기타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양측은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EU와 미국 양측은 협상 시작 당시 타결 목표를 2015년 말로 정했으나, 차기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TTIP 협상의 전개 및 타결은 사실상 난망해졌다.

TTIP는 양측의 상이한 경제상황, 법률구조, 규제체계 그리고 접근방식의 차이로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특히 EU의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는 TTIP으로 인해 규제 완화, 기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럽국가의 규제 권한이 약화되고 유럽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협상 초기부터 영상 부문(audio-visual)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부분은 일단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EU는 TTIP 협상에 데이터 보호 기준(data protection standards)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EU 데이터 보호조항을 고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EU 간 막대한 투자규모 및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금융서비스 규제와 투자보호 조항은 TTIP 협상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TTIP 협상 이전에도 양측은 Financial Markets Regulatory Dialogue(FMRD)를 통

해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규제 정책의 공조를 위해 관련 규제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후퇴를 우려하는 반면, EU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표 3-2. 미 · EU FTA(TTIP) 주요 장별 EU의 협상 목적

협상 분야	장(chapter)		EU의 협상 목적
시장접근	상품무역과 관세		• 무역장벽 철폐, 유럽경제 성장 · 고용 창출, 유럽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서비스		• EU-미국 서비스 기업간 균등한 경쟁 여건 조성 • 공공서비스 부문 EU 회원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권한 확보
	공공조달		• 미국 공공조달시장에의 참여 확대 • 유럽기업의 미국기업과 균등한 경쟁 여건 확보
	원산지 규정		• 유럽과 미국 생산 제품에 TTIP의 관세 혜택 부여 • 생산자 편의성 고려 규정 제정
규제이슈	규제 일관성		• 양측 규제의 호환성 증진 통해 고용과 성장 촉진 • 소비자 선택권 확대
	TBT		• 제품의 기술요구 사항 관련 양측의 협력 개선 • 불필요한 중복검사 요구 완화 • 양측 규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SPS		• 대미 수출농산품의 미국 측 수입 검사기간 단축 • 동물복지 관련 양측 규제 당사자간 보다 긴밀한 협력 추구 • 엄격한 EU의 식품안전기준 고수
	8대 산업 분야	화학	• 현행 협력 체제 활용, 양측 규제 당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 추구 • 양측 규제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 최소화 • 안전, 환경보호 관련 엄격한 EU 기준 준수
		화장품	• 안전검사, 제품 라벨링 등 관련 양측 규제 당국의 긴밀한 협력 • 신규 제품의 검사 · 승인 관련 소요시간 최소화
		엔지니어링	• 양측 기술요구사항 및 검사방법 균등 조율 • EU의 높은 기준 유지 • 엔지니어링 상품 수출입 원활화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접근 · 이력 관리 제고 • EU의 높은 안전기준 유지
		정보통신 기술	• 규제 집행과 소비자 보호 방안 개선,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 • EU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
		제약	• 의약품 관련 엄격한 기준과 효율성, 품질, 안전 제고 기여 • 신약개발 관련 규제도입 시 상호간 협력 지원
		섬유	• 양측 규제 당국간 협력 증진(원산지, 관세, 라벨링, 안전 등)
		자동차	• 양측 기준의 동등성 확인(상호인정), 일부 규정 조율 추진 • 글로벌 규정 개발, 신규규정 도입 시 상호 협력

표 3-2. 계속

협상 분야	장(chapter)	EU의 협상목적
통상규범	지속가능한 개발 (노동 및 환경)	• 노동 · 환경 관련 기본법 준수 • TTIP 이행에 시민사회 참여 유도, 기업의 사회적 참여 독려
	에너지 및 원자재	• 에너지/원자재 조달 관련 규칙과 경쟁 기반 개방적, 지속가능 여건 조성 • 현존 제약사항 철폐, 그린 에너지 개발 추구
	관세 및 무역원활화	• EU-미국 교역, 통관 관련 업무 간소화 • 통관규정 준수 상품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 250인 이하 중소기업 대미 수출입 업무 지원
	투자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 EU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미국 기업과의 균등한 경쟁 여건 조성 • 현행 투자자보호 시스템 개정
	경쟁	• 양측 기업의 가격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 민간기업, 국영기업과 균등 조건 경쟁 여건 조성 • 계열 기업간 거래 투명성 확보
	지재권 및 지리적 표시제	• 양측의 공동 원칙 및 긴밀한 협력방안 모색 • 혁신 및 연구 관련 투자 촉진
	정부간 분쟁해결	• TTIP 이행 시 양측 정부간 이견 발생 경우, 원활한 해결 메커니즘 설립 • 현행 WTO 체제 기반 제도 설립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 (검색일: 2015. 10. 7), 재인용: 강유덕, 양효은(2015), p. 10.

요구하는 등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규제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과 함께 ISDS 조항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을 우려하는 EU 내의 반대로 EU는 TTIP에서 투자보호 및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 측은 2014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TTIP 협상에 ISDS 조항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 15만 건의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TTIP에 ISDS를 포함하는 것은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협상 지침의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나 ISDS 조항의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42] 게다가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롯

한 투자자의 의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익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EU 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TTIP에 투자보호와 ISDS 조항을 채택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함은 물론 오히려 기존 투자협정보다 투자자 보호가 약화되어 EU의 기업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 속에서 시작된 미국과 EU 간 TTIP 협상은 초기 조기타결에 대한 기대와는 반대로 협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양측 법률구조, 경제상황, 규제체계 및 이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표 3-3 참고). 또한 TTIP는 기존의 관세협상

표 3-3. EU와 미국의 글로벌 규범전략 비교

구 분	E U	미 국
공통점	• 'WTO-Plus' 지향 : WTO/TBT 협정문에 명시된 규제분야와 함께 SPS, 서비스, 공공조달 등을 포괄하여 보다 높은 개방성, 투명성 및 규제간 조화 추구	
규제방식과 접근방법	• 하향식(top-down) 규제 시스템 • 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국제화, EU 집행위를 통해 중앙 집중화 • 노동자 권익보호, 환경, 식품위생 및 유전자 조작,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규제 당국이 시장에 적극 개입	• 상향식(bottom-up) 규제 시스템 • 규제 당국이 분권화되어있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자율적인 성향 강함 • 심각한 시장 실패가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최소 개입 원칙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	• 역내 표준화 과정으로 국제표준에 유럽표준 기반영 • 상호간 국내규정의 동등성 인정과 국제 표준과의 조화 촉구 • 조화 대상인 구체적인 국제표준 명시	•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위한 협력 추구 • 상호간 안전기준의 동등성 인정 및 기준 준수 인증의 상호인정 • 협력 추구 국제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음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	• EU 역내에서 조화된 적합성평가 절차의 국제표준화 • 적합성평가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조화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도입 요구를 통해 EU 수준으로의 조화 추구	• 다자간 MRA 양자간 FTA에 도입,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 • 국제표준에 기초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실시에 대한 요구가 전제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42) Report on the online consultation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January 2015), 강유덕, 양효은(2015, p. 15, 재인용).

에 비해 협상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은 물론 규제의 상호인정 혹은 조율을 통한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EU 간 무역협정을 넘어서 국제 다자간 통상질서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에 의한 다자무역협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EU는 WTO를 통한 통상협상의 진전이 쉽지 않음을 고려, 우선 미국과의 규제협력을 통해 향후 다자무역통상규율을 정비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시행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실제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조항에 대해 투자법원제도의 창설을 제안, 향후 국제투자법원(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TTIP 협상에서 제기되는 주요 규제 및 제도적 변화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EU는 예전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토대로 EU 규범을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자국 규범의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2000년대 중반 DDA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이번에는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명시적인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EU 규범의 확산을 주도해오고 있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EU FTA가 좋은 사례가 되며, 이어서 EU・캐나다 CETA, EU・베트남 FTA 등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전격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글로벌 규범을 둘러싼 미국과 EU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미국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TPP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메가 FTA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TTIP에 대해서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OECD 사무총장[43] 등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일부에서는 최근 TTIP 협상 중단 촉구를 비롯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등 향후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는 상반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터져 나온 브렉시트(Brexit)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팽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영・EU 탈퇴협상과정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탈퇴협상 전개과정과 연계하여 한・EU FTA 개정 재협상과 한・영 FTA 협상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44] 규범 분야로 국한해서 본다면, 브렉시트가 완전히 현실화되면 향후 영국과 EU 간에 규범은 점점 서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EU 간에 표준경쟁(standard competition)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미국과 규제 수렴을 위한 별도의 노력, 예컨대 NAFTA 가입과 같은 일이 없다면 향후 미국, 영국, EU 삼자 간 표준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TTIP을 통한 규제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한・EU FTA는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EU 측은 직접운송, 수리 후 재반입, 트럭・트랙터, 자동차 안전기준 목록 수정 등 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해왔다.[45] 당시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유보적 입장을 밝혀

---

43) CNBC 2016년 9월 3일자 방송 인터뷰에서 OECD 총장은 "TTIP는 미국과 EU 양측에 꼭 필요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TT IP is tough but governments shouldn't give up, OECD and WTO officials say"(2016. 9. 3), http://www.cnbc.com/world/?region=world후략(검색일: 2016. 9. 6).

44) 김흥종, 임유진(2016), pp. 19~20.

45) 당시 EU 측의 4가지 개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운송의 원칙을 수정하여 분할수탁(split consignment) 방식을 수용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 현재 한・EU FTA 체제에서는 직접운송의 법칙이 적용되어 양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특혜대우가 적용되나, EU는 수입국에서 출발한 후 제3국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최종목적지로 선적, 수출되는 분할수탁 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

개정논의는 잠정적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한・EU FTA 개정논의가 다시 이슈화될 때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한・EU FTA 발효 이후 EU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글로벌 규범 이슈에 대해 많은 진척을 이룬바, 향후 한・EU FTA 개정 시 이를 반영하려 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한・EU FTA 개정에 대비하여 EU 측의 예상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EU FTA 이행과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과를 파악하여 개정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EU FTA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한국 측의 개정 요구사항으로 발전시키고 EU 측의 수용가능성을 점검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특히 전술한 한・EU FTA 사례에 나타난 EU의 글로벌 규범 전략이 발효 이후 국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내 기업이 한・EU FTA 발효 이후 글로벌 규범에 얼마나 적응하였는가와 이러한 EU의 글로벌 규범 전략 추진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향후 EU 측의 추가적인 글로벌 규범화 요구에 실질적, 경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범화에 대한 충분한 성과가 있는 부분은 한국의 對개도국 FTA 협상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EU 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EU는 현재 발효 중인 특혜관세협정(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는 탁송분할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②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요구, 항공기 부품과 같은 기계류에 적용 예상 ③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속) 적용의 예외 품목에 트럭-트레터를 포함시킬 것 ④ 부속서 2-다-3을 수정: 자동차 안전기준 목록 수정(대외비 자료).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EU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확대는 역내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통상정책 또한 대외개방의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적 성장 및 고용 유지/확대를 위하여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EU 신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FTA 전략은 FTA를 통한 대외개방이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EU 회원국의 수가 늘어나고 EU가 체결하는 FTA의 수가 증가할수록 FTA가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EU가 체결하는 FTA가 EU 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이러한 절차 체계 내 고용촉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EU의 FTA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표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고 기존에 이루어진 FTA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가 도입된 배경과 이행평가의 특징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3절에서는 EU의 FTA 이행평가 체계 및 협정문에서 고용증진 목표가 어떻게 투영되어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4절에서 소결을 내고자 한다.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1987년 UN의 브룬트란트보고서(Brundtland Report)[46]가 정의한 지속가

46) 공식적으로는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로서 1983년 UN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에 의해 작성되어 1987년에 발표되었다.

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47]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 및 개발 컨퍼런스(UNCED)에서 '어젠다 21(Agenda 21)'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여 중요한 정책의 결정 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두 고려하도록 촉구하면서 확대되었다.[48]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EU 내부적으로도 이를 주요 전략 목표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및 사회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인 리스본전략(Lisbon Agenda 혹은 Lisbon Strategy)이 2000년에 채택되었다.[49] 즉 리스본전략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성장이나 고용촉진과 같은 부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스본전략은 연간 3%의 경제성장률 달성, 70%의 고용률 달성, GDP 대비 3%의 R&D 투자 달성, 금융 및 서비스 시장 통합, 거시경제정책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04년 네덜란드 전 총리 빔 콕(Wim Kok)의 주도로 진행된 중간평가에서 기존의 리스본전략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해 수정 리스본전략이 등장했다. 수정 리스본전략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참여율 저하의 해소방안 모색과 EU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교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등장했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했다.[50]

---

47) UN WCED(1987), p. 16.

48)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Agenda 2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outcomedocuments/agenda21(검색일: 2016. 6. 17). 어젠다 21은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UN기구, 정부 및 주요 기관들이 취해야 하는 인간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으로 178개국의 정부가 참석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채택되었음.

49)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http://www.bmub.bund.de/en/topics/europe-international/europe-and-environment/eu-strategy-for-sustainable-development/#(검색일: 2016. 6. 17).

표 4-1. 수정 리스본전략 요약

3대 영역	10대 실행계획
투자와 고용에 좋은 환경 조성	① 역내시장의 확대 및 심화 ② 대내외시장 개방 추구 * FTA 추진, 외국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정부 보조 축소 등 ③ EU차원과 국가차원의 규제 개선 ④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지식과 혁신 기반의 성장	⑤ R&D 투자 확대 및 개선 ⑥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효율적 자원 이용 장려 산업 발전 지원, 생태 효율적 혁신 증진 ⑦ 강한 산업 기반 구축 조성
고용창출	⑧ 고용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현대화 ⑨ 기업과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유연성의 조화 ⑩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5), 재인용: 강유덕(2013), p. 44.

EU가 다른 지역 혹은 국가들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외에도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그리고 경제적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51] 이것은 EU의 특혜무역협정이 통상정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측면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52] 따라서 2006년까지 EU의 통상정책은 비록 1990년대 남미지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FTA 체결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에 더 중점을 두었다.[53]

2006년 이후부터 EU가 역외국과의 FTA에 대해 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게 된 동기는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안정성 확보라는 정치적 동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동기에는 무역전환

50) 강유덕(2013), p. 59.

51)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Agreement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agreements/(검색일: 2016. 6. 15).

52) Baldwin(2006), p. 938.

53) Woolcock(2007), p. 2.

(trade diversion)효과의 최소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중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국제 규범 강화 등이다.[54] Woolcock(2007)은 EU의 통상정책에서 FTA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바뀌기 시작한 이유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관련 다자간 협상에서의 난항이 발생한 점, FTA를 다자간 무역자유화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미국 통상정책이 FTA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통상정책을 취하는 등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여 이들과의 FTA 필요성이 증대한 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55]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2010년에 유럽 2020 전략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이후의 통상정책이 조정되었다.[56] 유럽 2020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럽 2020의 핵심이 되는 2010년 통상백서 또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의 통상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확대하여 EU의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상품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57]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고용의 7.2%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고 EU 노동시장의 18%에 해당하는 3,600만 개의 일자리가 무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개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58]

2015년 EU의 신통상정책은 역외교역 확대가 EU의 GDP 성장 및 고용 부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바, 역외 지역과의 개방무역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54) Woolcock(2007), p. 3.

55) *Ibid.*, p. 5.

56) 2010년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백서는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라는 제목으로 발표됨.

57) European Commission(2010d), p. 5.

58) European Commission(2010a), p. 3.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교역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의 내수 약세를 보완, 경기회복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역외교역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59] 또한 EU 내 일자리 7개 중 하나가 역외수출로 인해 생성된 일자리로 역외수출의 증가가 EU의 일자리 수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EU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에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6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는 EU의 통상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EU가 개방무역의 당위성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서 찾고 있어 역외국과의 FTA 체결 시 EU 경제의 성장과 고용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무역자유화 혹은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Papageoriou, Choksi, and Michaely(1990)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과 감소하는 산업이 상쇄되어 절대적인 고용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았다.[61] 하지만 Lee(2005)가 언급했듯이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간접적이며 다른 환경 조건들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62] 또한 Hoekman and Winters(2005)가 정리한 바와 같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고용증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59) European Commission(2015b), p. 8.

60) *Ibid.*

61) Papageorgiou, Choksi, and Michaely(1990), "Liberalizing foreign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essons of experience,"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후략(검색일: 2016. 10. 10), p. 36.

62) Lee(2005), p. 7.

63) Hoekman and Winters(2005), p. 25. Hoekman and Winters(2005)는 무역자유화와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바, 고전주의학파는 장기적인 고용에 대체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케인즈학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총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보

가 고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다. White(2014)는 미・캐나다 FTA와 NAFTA 체결 전후인 1972~2001년 무역량 변화와 미국 생산직/비생산직의 고용변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White(2014)는 각 산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FTA로 인한 수입증가 시 고용감소가 나타났으며 고용순감소는 대체로 무역수지 적자를 수반하는 평균 이하의 기술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된 반면, 자본집약적 생산을 하고 평균 이상의 기술력을 지닌 수출주도형 산업에서는 고용창출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64] 이는 미국에서의 고용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로서, EU가 체결한 FTA로 인해 EU 고용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실증연구는 아직 미비하다.[65] 더욱이 EU가 체결한 포괄적 FTA의 첫 사례가 한・EU FTA로 이 또한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진 바, FTA로 인한 EU 고용에 대한 유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기상 아직 관련 자료의 누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EU의 FTA와 고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FTA가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행평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EU 회원국의 통상정책이 EU 집행위원회를 주축으로 결집하게 된 계기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EU의 무역자유화를 효과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이다.[66] 탈냉전 이후 EU의 양자간 FTA 확대에는 국제무대에서 EU의 확고한 지

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요약했다.

64) *Ibid.*, p. 107.

65) Stevens *et al.*(2015), p. 16.

66) Dür(2008), p. 28.

위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으나, 2000년 이후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실리 취득이라는 목적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Woolcock(2007)은 이에 대한 사례로 EU・멕시코 FTA를 비롯하여 EU・칠레 FTA나 한・EU FTA 등을 들었다. 특히 EU・멕시코 FTA의 경우, NAFTA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67]

EU의 성장정책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도입 후 EU는 FTA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EU 회원국 수의 증가는 이해관계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바, EU의 FTA 실시에 대한 당위성을 더 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Baldwin(2006)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한 EU 통상정책, 많은 EU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여 의지, 모든 회원국을 대표한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진행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만, 완전한 투명성과 EU 집행위원회의 보고(報告)를 통해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8] FTA 이행평가 체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FTA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체계로 이해되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행평가가 실시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나, FTA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체계화된 일련의 절차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한・EU FTA 이후이다.

이행평가는 EU가 FTA 체결 시 EU 역내에 나타날 수 있는 고용 측면에의 영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FTA 이행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FTA가 EU 고용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자 했고, 이행평가라는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EU 전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EU 차원에서 역외국과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고용과 관련된 이행평가는 사회분야에서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67) Woolcock(2007), p. 3.
68) Baldwin(2006), p. 930.

표 4-2. 이행평가에서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고용 수준에의 영향	
1.	고용 수준에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간접효과가 나타나는가?
2.	이 정책옵션이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실직 위험에 추가적인 영향(예: 방해 혹은 촉진)을 주는 다른 요소는 없는가?
3.	이 정책옵션이 노동시장 참여나 노동시장 유동성을 통해 특정 집단의 노동공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고용 조건에의 영향	
1.	정책옵션이 임금이나 임금결정 구조 및 노동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책옵션이 노동보호, 특히 고용계약의 품질,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리스크 혹은 거짓된 자기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3.	정책옵션이 업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정책옵션이 건강 및 직장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예: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 혹은 상황에의 노출, 그리고/혹은 촉박하거나 시간 외 근무 시간)
5.	정책옵션이 사회적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6.	정책옵션이 직업 훈련 및 경력 계발/조언에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가?
7.	정책옵션이 EU의 근로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에 도움/위협이 되는가?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의 영향	
1.	정책옵션이 EU 전체 혹은 그 일부의 불평등이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책옵션으로 인해 불충분한 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 혹은 확대되는가? 정책옵션이 빈곤률 혹은 극심한 물질 손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3.	정책옵션이 사회보호제도에의 접근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4.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나 감당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c), pp. 181-184.

도 다루어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69]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TA 이행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 Better Regulation Toolbox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고용수준, 노동조건, 소득분배 및 불평등 등을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회문제이면서 EU의 다른 계획에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70] 물론 기술력의 개인차 등에 따라 고용수준, 노동조건, 소득

69) European Commission(2015a), p. 26.

70) European Commission(2015c), p. 180.

분배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FTA 개방수준에 따른 정책옵션(policy option)을 위주로 EU 역내 산업 및 고용에의 영향에 대해 [표 4-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들은 이행평가 체계 전반에 나타나는 고용 관련 분석의 바탕이 되고 있다.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1) FTA 협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단계별 진행

EU가 FT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행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FTA를 진행할 때 각 단계마다 평가체계를 두는 것은 투명성과 보고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

그림 4-1. FTA 협상 단계별 이행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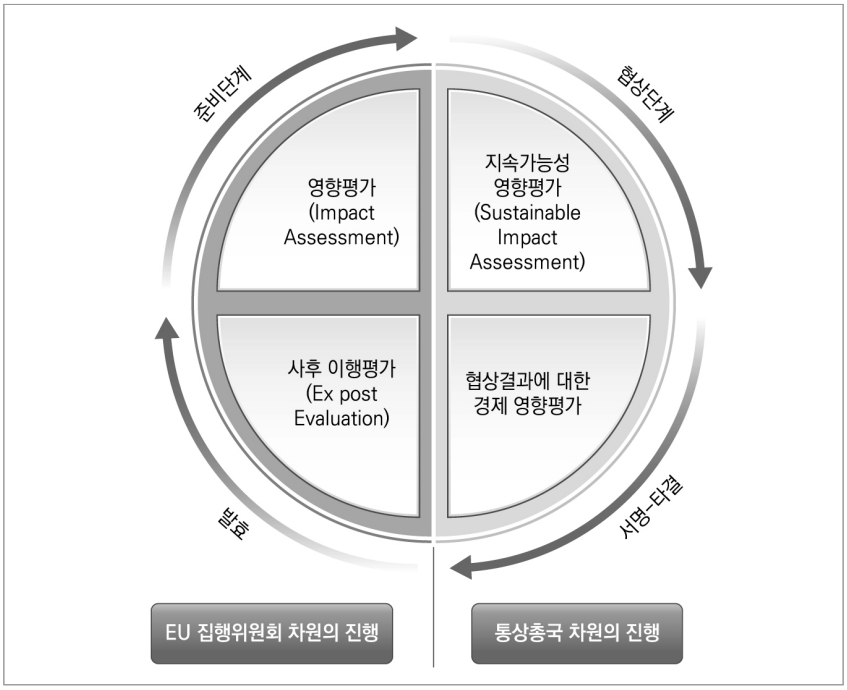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b), p. 7.

한 방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실시하는 FTA를 비롯한 무역협상 관련 이행평가 절차는 협상의 단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평가는 크게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이하 IA), 협상 진행 중일 때 실시되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이하 SIA), 협상타결 후 서명 전에 실시하는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assessment of the negotiated outcome), FTA 발효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 이행평가(Ex Post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71] 이 중에서도 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EU 집행위원회가 많은 상대국들과의 FTA협상 경험을 축적하면서 체계화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후 이행평가(Ex Post Evaluation)는 기 체결 FTA가 발효 후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72] 이러한 이행평가라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느 국가와 무역협상을 추진하든지 EU의 통상정책이 역내경제에 효과적으로 투영되고 있는지를 유사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행평가의 내용도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진행되는 내용에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IA와 SIA가 유사해 보이나, IA는 통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EU가 협상에 임해야 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인 반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작성되는 SIA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특정 분야에의 영향을 분석한 심층적인 보충자료이다.

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이러한 협상절차는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EU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71) European Commission(2010b), p. 14.

7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부록 참고.

있고 각자의 관심이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의 의사결정에 있어 '협의(consultation)' 과정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협의는 통상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EU의 의사결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EU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서는 '협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협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 단계에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실시한다.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① 인터넷의 활용 ② 직접 면담, 회의, 공청회, 설문조사 ③ 시민 사회와의 회의, 워크숍 개최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73]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의 경우, SIA 수행 주체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 착수보고서 완료 시점부터 최종보고서의 승인 후 2년까지 모든 SIA의 단계별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 통상총국의 모든 보고서는 SIA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 직접 면담, 회의는 전문가들(inter-professional)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는 물론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선별적 설문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IA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초안 발표 시마다 시민사회와 최소 1회 이상의 회의를 갖도록 요구되는 바, FTA 협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이 전달되어 SIA 수행 주체가 각 단계별 보고서 최종안의 작성 시에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상 요구하고 있다.

3) 외부 연구 인력의 활용

이행평가 연구는 EU 집행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EU 통상총국(DG Trade)의 책임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73) European Commission(2016b), pp. 27-30.

다.[74] 영향평가(IA)는 협상이 개시되기 전 시작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규제검토이사회(Regulatory Scrutiny Board)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내용상 감독을 받는다.[75]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IA 보고서가 EU 집행위원회가 협상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EU는 SIA 안내서(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개정판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인력을 어떻게 기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가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전문가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어떠한 형식의 내용을 원하는지 EU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연구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경제 외적인 부문의 반영

이행평가는 비단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제 외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데, EU 집행위원회는 FTA를 통해 가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고, 한・EU FTA를 시작으로 이를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76] 부문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대한 안내서를 비교했을 때, 기존 통상정책하에서 FTA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주로 강조했다고 하면, 신

74) 예컨대 한・EU FTA 이행평가의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상총국의 요청으로 2016년 8월부터 외부연구기관인 CIVIC Consulting에 의해 시작되어 13개월 동안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관계자 인터뷰(2016. 10. 10, EU 집행위, 브뤼셀, 벨기에).

75) European Commission, “Regulatory Scrutiny Board,” http://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regulatory-scrutiny-board_en(검색일: 2016. 9. 6).

76) European Commission(2010b), p. 12.

통상정책하에서는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되 인권이나 행정적인 부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언급하고 있다.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상조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는 EU와 유사하며, [그림 4-2]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조약법」 제9조에 따르면, 통상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해당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EU의 영향평가(IA) 단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역, 투자, 비교우위 산업 분석,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생산 효과 분석 등이 실시된다. 다음 단계는 통상협상이 합의된 이후 영향평가의 실시로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르면 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②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④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규정

그림 4-2.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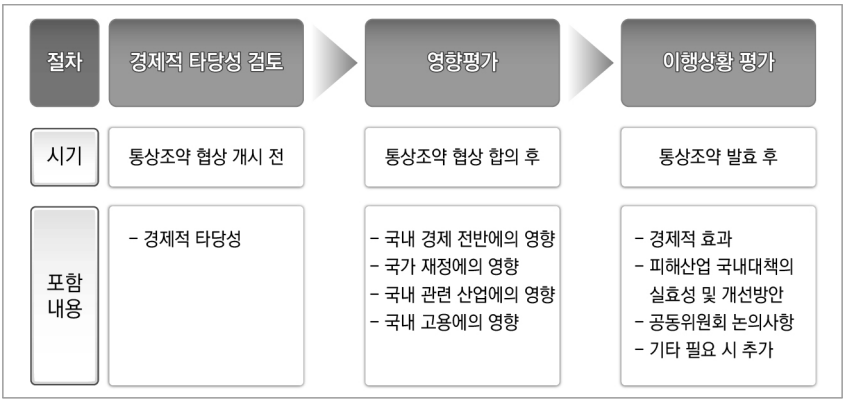

자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타법개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고 있다. 이는 EU에서 실시하는 협상 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평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조약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상황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행상황 평가를 5년마다 혹은 필요시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이행상황 평가가 EU의 사후 이행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이행상황 평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점에서 EU와의 차이를 보인다.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EU가 체결하고 있는 FTA 협정은 상기 이행평가에서 이루어진 고용 관련 분석 및 제안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별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 사항이 명시되기도 하고 FTA 협상문건에 간접적인 형태로 반영되기도 한다. 2010년 체결,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는 EU와 아시아국가 간에 체결된 첫 FTA인 동시에 '차세대 FTA(New Generation Free Trade Agreement)'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다.[77] 비록 EU가 표방하는 지역주의가 대상지역이나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EU FTA를 모범사례라 여겨 후

표 4-3. 한・EU F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완전 개방 시의 영향

(단위: %)

구 분	EU	한국	기타
GDP 변동률	0.01	0.15	0.03
수출 가치의 변동률	0.25	1.68	0.12
비숙련 노동	-0.02	-0.45	0.23
숙련 노동	-0.08	-0.14	0.26

자료: IBM Belgium, DMI, TAC & TICON(2008), p. 107.

77) European Commission(2011), p. 3.

그림 4-3. 한 · EU F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한 · EU FTA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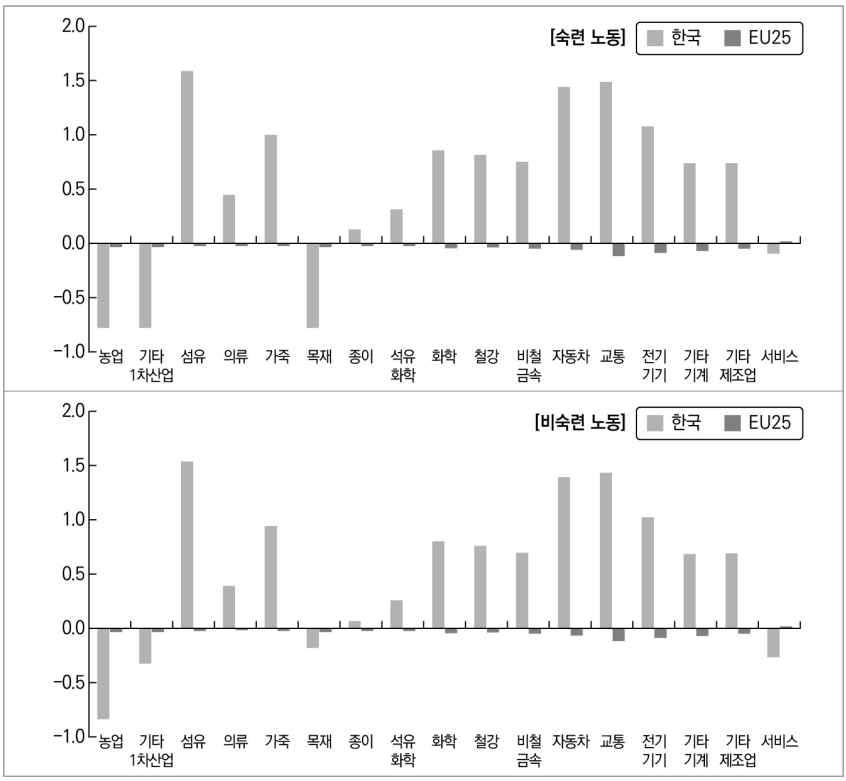

자료: IBM Belgium, DMI, TAC & TICON(2008), p. 107.

속 FTA들의 진행시 한・EU FTA를 기초로 한 심화된 FTA를 추진하고 있다.[78] 2008년에 발표된 한・EU FTA SI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FTA로 인한 산업간 대규모 생산변화나 저임금 고용 혹은 실업의 대폭적인 확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79] 한・EU FTA SIA의 GTAP 시뮬레이션에서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 시 EU 노동시장의 총 고용은 [표 4-3]과 같이 비숙련 노동자가 −0.02%, 숙련 노동자가 −0.08%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Copenhagen

78) 김세원(2004), p. 607.

79) IBM Belgium, DMI, TAC & TICON(2008), p. 21, p. 108.

Economics 연구에 따르면 개방 정도가 달라도 EU의 고용 측면에서는 0%로 불변일 것이라 보았다.[80] SIA는 세부 산업별로 보았을 때 [그림 4-3]과 같이 FTA가 한국보다는 EU 고용에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모두 고용 감소, 특히 2차 산업의 고용 감소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본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FTA 시나리오에서 EU의 자동차생산 관련 일자리 33만 4,000개, 낮은 수준 FTA 시나리오에서 6만 개의 감소를 예상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일자리 감소 효과도 완화되고 숙련 노동력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바, 고용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1] 한편 금융업이 완전 개방될 경우, 금융 및 은행 서비스에 대한 EU의 비숙련 노동자 고용은 0.3%, 숙련 노동자 고용은 0.1% 증가, 보험 부문은 비숙련이나 숙련 노동자 모두 -0.1%로 감소하게 되나, 결과적으로는 FDI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82] 이에 비해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에서는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어 생산성 증가로 이

표 4-4. 한 · EU FTA와 EU · 캐나다 CE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의 고용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한 · EU FTA	EU · 캐나다 CETA
지속 가능성 영향 평가 (SIA)	• 중장기적으로 양측 모두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 인식 필요 • 고용 전반에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 분야 혹은 지역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CETA로 인해 농수산업 부문 고용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 노동의 품질에 대한 영향은 불명확하나 EU 측 농업과 식품가공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악화 우려 •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FDI 유입, 기술이전으로 EU 고용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파급효과 예상
비고	2010년 서명, 2015년 발효	2014년 9월 타결, 2016년 10월 서명

주: 각 협상의 SIA Final Report 기준.
자료: IBM Belgium, DMI, TAC&TICON(2008); Kirkpatrick *et al.*(2011), 참고하여 저자 정리.

80) *Ibid.*, pp. 104-105.
81) *Ibid.*, p. 27, p. 133.
82) *Ibid.*, p. 195.

어지고 관련 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표 4-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수가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보장, 안정적인 수입 보장, 안정적인 노동력 유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83] 한・EU FTA는 상기 내용을 반영했듯이 높은 수준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졌고 협정문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창출, 양질의 일자리가 강조되었다.[84] 또한 한・EU FTA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GI)의 인정'을 통해 EU 농업의 보호, 즉 EU 내 관련 업종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간접적인 방안도 포함되었다.[85]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고용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바, 지적재산권의 투자, 창의성, 그리고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9월에 지적재산권 관련 담화(Dialogue on Intellectual Property)를 위한 회동이 진행되기도 했다.[86]

다음은 EU・캐나다 FTA를 살펴본다. EU 집행위원회는 EU・캐나다 CE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성장과 유럽의 일자리 및 소비자 후생에의 기여를 기대

표 4-5. EU · 캐나다 CET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협상 시나리오별 농업, EU의 가공농산물 및 수산업 부문 장기고용 변화 예상치

구분	민감 품목을 고려한 협상 시 고용에의 영향	관세 완전철폐 시 고용에의 영향
기타 곡물	-	+
낙농제품	-	++
기타 가공농산물	-	+
음료	+	+
밀	+	-
지방종자	-	-
소고기	0	-
돼지고기	0	--

주: +는 약간 증가, ++는 상당히 증가, -는 약간 감소, --는 상당히 감소, 0은 변화 없음을 의미.
자료: Kirkpatrick *et al.*(2011), p. 80.

83) *Ibid.*, p. 154.
84) 외교통상부(2010), p. 8.
85) 위의 책, pp. 955~956.
86) European Commission(2013a), p. 7.

한다고 밝히고 있다.[87] EU・캐나다 CETA는 2014년 협상을 타결, 2016년 10월 서명했으며 현재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11년에 발표된 EU・캐나다 CETA SIA 최종보고서는 크게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 및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구분하고 있고, 고용을 각 부문 사회적 분석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EU의 낙농, 가공식품 및 음료가 캐나다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완전 개방 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4-5]와 같이 EU・캐나다 간 농수산 부문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개방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음료나 밀 관련 고용이 약간 증가(+)하고, 우・돈축업 고용에는 변화가 없으나(0) 기타 작물, 낙농업, 기타 가공농산물 등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완전개방이 된다면 낙농업(++)을 중심으로 기타 곡물, 기타 가공농산물, 음료 등이 증가(+)하고 밀, 지방종자, 우축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며 돈축업은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88] 이에 협상 시 개방 단계 및 원산지 규정, 소고기/돼지고기 등의 민감 품목을 고려한 협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타결된 EU・캐나다 CETA 협정문 22장과 2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의 품질 향상 및 고용 보호를 강조했고,[89] 민감 품목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을 적용하여 산업 및 고용을 보호하고자 했다.[90]

EU・베트남 FTA는 처음부터 양자간 FTA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07년에 시작된 EU・ASEAN FTA 협상이 2009년에 중단되면서 ASEAN 개별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으로 발전했고 베트남과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하여 2016년 2월에 타결했으며 서명과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87) European Commission(2016c), p. 6.

88) Kirkpatrick *et al.*(2011), p. 82.

8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6),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 후략(검색일: 2016. 10. 5), pp. 359-379.

90) *Ibid.*, pp. 37-58.

EU・ASEAN FTA에 대한 SI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FTA로 인해 베트남의 전기기기, 기계 및 설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베트남의 생산이 개방 수준이나 장단기에 무관하게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91] 역으로 EU의 입장에서는 이 부문의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U와 베트남 간의 주요 교역품목 중 전기기기 및 설비나 원자로-기계장치 등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상호간 중첩되는 품목들이지만 전기 기기, 자동차, 이륜차, 기계설비 등에서는 EU가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니기 때문이다.[92][93] EU는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ambitious and comprehensive) FTA'를 지향했다.[94] EU의 對베트남 수출품목 중 일부는 관세가 35%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EU・베트남 FTA를 통한 관세 철폐 계획은 기계 및 장치류 즉시, 의약품 즉시 혹은 7년, 화학제품 품목의 70%는 즉시, 나머지는 7년, 자동차 10년, 이륜차 7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FTA 발효 즉시 제조업 제품의 누적관세가 31.3%, 5년차에는 15.2%, 10년차에는 완전 개방에 이르는 것이다.[95] 베트남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 혹은 철폐는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화학품 등에 대한 수출 기회 확대로 연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U 내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EU・일본 FTA의 고용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일본은 EU의 2대 교역국으로 EU가 중시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2012년에 EU・일본 FTA에 대한 I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어 2013년 3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었고, 2016년 4월까지 16차 협상을 마친 상태이다. I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EU의 정보기술, 가전 및 통신 부문에 대한 경

91) Ecorys(2009), p. 29.

92) European Commission(2016a), p. 12, p. 15.

93) Duong(2016), p. 20.

94)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Countries and Region: Vietnam,"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vietnam/(검색일: 2016. 10. 14).

95) European Commission(2016a), p. 25.

표 4-6. EU · 일본 FTA 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 부문별, 노동자 기술력별 EU 고용 변화 예상치

(단위: %)

구분	보수적 FTA				높은 수준 FTA		기준 고용 비중	
	저숙련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		저숙련	고숙련	저숙련	고숙련
	NTM 비용절감 미 고려	NTM 비용절감 고려	NTM 비용절감 미 고려	NTM 비용절감 고려	NTM 비용절감 미 고려	NTM 비용절감 미 고려	-	-
농림수산	0.13	0.07	0.13	0.07	0.12	0.12	6.12	0.55
기타 1차 산업	0.00	0.00	0.00	0.00	-0.01	-0.01	0.50	0.31
가공식품	0.42	-0.10	0.43	-0.12	0.14	0.15	3.98	1.77
화학	-0.45	-1.74	-0.45	-1.76	-0.97	-0.97	3.01	2.40
전기기기	3.05	7.28	3.05	7.26	8.23	8.24	0.55	0.44
자동차	-0.40	-0.19	-0.39	-0.21	-0.24	-0.23	2.71	1.48
기타 운송 장비	-0.18	-0.05	-0.18	-0.07	-0.28	-0.28	1.29	0.70
기타 기계류	0.00	0.32	0.0	0.30	0.34	0.34	5.52	4.59
금속 및 금속품	-0.32	-0.85	-0.31	-0.87	-0.68	-0.68	3.47	1.60
목제 및 지류제품	-0.03	-0.17	-0.02	-0.19	-0.12	-0.11	3.17	1.62
기타 제조업	-0.22	-0.38	-0.21	-0.40	-0.55	-0.54	3.55	1.43
수상 운송	0.03	-0.02	0.04	-0.05	-0.10	-0.09	0.53	0.27
항공 운송	-0.53	-0.51	-0.52	-0.53	-1.31	-1.30	0.54	0.28
금융	-0.10	-0.06	-0.09	-0.08	-0.26	-0.25	2.50	4.07
보험	0.04	0.11	0.05	0.09	0.09	0.10	0.94	1.53
비즈니스 서비스	-0.11	-0.11	-0.10	-0.13	-0.28	-0.28	9.98	16.30
통신	-0.03	0.01	-0.02	-0.01	-0.08	-0.07	1.61	2.60
건설	0.09	0.24	0.10	0.22	0.20	0.21	10.02	4.38
개인 서비스	-0.04	0.03	-0.04	0.01	-0.11	-0.11	2.59	4.22
기타 서비스	0.04	0.10	0.05	0.08	0.09	0.10	37.42	49.44

주: 높은 수준 FTA 자료에서는 NTM(비관세조치) 비용절감을 고려한 데이터 미상.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p. 77.

쟁력 향상 및 일본 시장 접근성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 혹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96] EU · 일본 FTA로 인해 고용에의 영향에서는 산업 부문별로 약간씩 차이가 날 것으로 보았다. [표 4-6]과 같이 전기기기 부문

96) European Commission(2012), p. 36.

에서는 저숙련 및 고숙련 노동자 모두 개방 정도에 따라 3~8% 수준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이외에도 농림수산업, 가공식품업, 보험업, 건설업에서도 약간의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화학,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금속 및 금속품, 기타 제조업, 항공 운송 부문 등에서는 EU 고용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보수적 협상을 할 경우 약 −0.4%,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할 경우 약 −0.2%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215억 유로 규모의 투자로 EU 내 13개 자동차 생산 공장 및 12개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13만 6,000명의 고용과 같이 일본의 EU 투자 확대가 무역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97] EU・일본 FTA에 대한 SIA 최종보고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2016년 상반기에 발표되었고 IA 분석과 같은 기조를 보였다. 다만 EU 전체로 보았을 때, EU 장기 고용은 -0.76~-0.78% 하락할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분석툴인 CGE 모델에 고용의 주요 동인인 투자가 포함되지 않은 까닭으로, 투자 포함 시 FTA 적용 전후 EU 경제 내 총 고용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98] SIA에서는 농업과 식품공업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EU・일본 FTA로 인한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IA에서 언급되었던 농림수산업 부문의 고용 증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99] 이것은 일본 식품시장의 고급 상품 선호 성향 때문이다. 고급 식품의 대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고숙련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한 최신 농업기술을 요하며 대량 생산보다는 나은 품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촉진과 함께 고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았다.[100] 이외에도 SIA에서는 포도주 등과 관련하여 낙후지역의 부의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해 한・EU FTA와 유사하게 지리적 표시(GI)를 강력히 보호

97) *Ibid.*, p. 46.
98) European Commission(2016e), p. 56, p. 131, p. 140.
99) *Ibid.*, p. 110.
100) *Ibid.*, p. 111.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101]

미국과의 TTIP는 2013년에 협상이 개시되었고 2016년 7월 15차 협상을 마친 상태이다. 2013년에 발표된 TTIP에 대한 IA 최종보고서에서는 개방의 수위가 높을수록 산업부문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비록 생산의 변화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문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자원을 끌어다 사용함으로써 전기기기 등 부문의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고, EU의 일부 농업부문에서 정리해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EU・미국 간 노동이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유럽세계화기금(European Globalisation Fund) 등을 통해 부문간 노동이동을 유도하여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2] 아직 협상 중인 TTIP이 고용에 미칠 영향은 [표 4-7]과 같이 부문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TIP SIA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가죽제품, 섬유, 의류 등에서는 고용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기기, 비철금속, 철강제품 등

표 4-7. TTIP 영향평가(IA) 및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나타난 EU 고용 관련 주요 내용

	영향평가(I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TTIP	• 개방 수위 높을수록 산업부문별 고용에 긍정적 영향 •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고용 증가 예상 • 현 불충분한 노동이동으로 향후 조정비용 발생 예상 • 유럽사회기금, 유럽세계화기금 등을 이용한 부문간 노동이동 유도로 잠재적인 단기적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필요	• 고숙련, 저숙련 노동 모두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고용 변화 예상 • 고용 변화는 부문별로 상이하고 생산 증가/감소와 연계(에너지 부문 0.3%↑, 가죽제품 제조업 2.2~2.3%↑, 전기기기 7.5%↓, 보험서비스 0.6%↑, 수상이동 0.4%↑ 등)

주: IA Final Report, SIA Interim Report.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b); Ecorys(2016) 참고하여 저자 정리.

101) *Ibid.*, p. 80.

102) European Commission(2013b), pp. 51-53.

제조업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103] 향후 TTIP 협상 결과에서 EU의 고용창출 혹은 고용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4. 소결

한국과 EU는 여러 차례에 걸친 FTA 등 대외통상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평가 체계도 발전시켜왔다. FTA 이행평가 체계가 각국이 처한 경제적 환경, 가치관, 산업 부문별 경쟁력, 시민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FTA가 국내 경제, 특히 국내 산업과 지역 및 고용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대외통상정책이 국내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조응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최근 통상정책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절차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EU의 평가체계에서 절차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EU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해당하는 단계가 우리의 평가체계에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체계는 필요 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에 해당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EU와 같이 공식적인 이행평가 절차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자연히 영향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도 EU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EU가 추가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의 사후 이행평가가 체결된 FTA의 이행정도 및 역내에 미친 실질적 개방 효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한국의 이행상황 평가는 FTA로 인한 국내 피해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103) Ecorys(2016), p. 94, p. 115.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의 이행평가 절차가 더 복잡한 까닭은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FTA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EU 내 각 회원국 및 산업마다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바, 함께 발전한 EU의 FTA 이행평가 체계도 이러한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 등 이행평가의 단계적 진행은 EU의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FTA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외부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EU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통상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경제 외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평가의 범위를 확대했다.

EU가 신통상정책을 취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확대는 EU의 각 FTA 이행평가 절차뿐만이 아니라 FTA 협정문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어있다. 사실상 EU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FTA 협정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고용 관련 심층 분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이 경제 분석의 일환으로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영향분석 시 각 산업의 세부부문마다 별도의 심층 고용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EU 각 산업부문별 고용에의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EU가 취하고 있는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파악할 수 있겠으나 각 회원국별, 지역별 고용에의 영향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부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FTA 협상에 반영하려 했다는 점과 EU 전반의 고용창출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4. 소결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운영이다. GVC 개념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과거의 개념이 수직적 분업체계에 근간을 둔 것이라면, 오늘날의 GVC는 모듈화된 공정이 무역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았다. GVC의 확산은 전 세계에 걸친 가치사슬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는 기회이자, 부담으로 다가온다. GVC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적의 중간재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입장에서는 자국기업이 GVC를 활용할 수 있도록 GVC 활용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정책의 경우 GVC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규범 확산 및 고용 확대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장에서는 EU의 신통상전략이 GVC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의 GVC 활용 수준을 검토한 후, EU가 FTA 추진 시 초점을 둔 분야별 정책방향이 GVC 활용 촉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지난 수년간 국제무역에 있어 글로벌 GVC에 관한 논의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GVC는 수직적 분할체계의 확대에 따라 상품생산 외에도 생산과정에서 특화와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현상은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점과 관련이 깊다.

GVC의 확산이 직무단위의 무역활성화로 대표된다면 GVC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현상은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다.[104] 과거 생산 및 조립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오늘날의 제조업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후기의 마케팅, 판매단계까지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은 해외로부터 조달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상품 생산에 있어 우수한 서비스 중간재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차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의 고용과 부가가치생산 축소를 상쇄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GVC의 확산과 더불어 가치사슬 운영을 위해 점차 전자적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함께 무역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trade)를 촉진하였다.

사실 GVC의 등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글로벌 소싱 등 유사한 개념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무역-투자 연계 현상이나, '공장으로서의 아시아(Factory Asia)' 등의 개념은 지역 차원에서의 GVC 논의로 볼 수 있다.[105] 반면에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재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지속적인 관세인하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각국의 GVC 활용에 유리한 무역정책들은 다국적 기업의 중간재 조달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분할화를 촉진하였다.

유럽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GVC 활용에 있어 두 가지 특수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유럽단일시장(Single European Market)으로 인해 상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이 일찍부터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역내에서는 EU 회원국간 상품 수출입에 관

---

104) Van der Marel(2015), "Positioning on the Global Value Chain Map: Where do You Want to Be? February.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ttp://ecipe.org/publications/후략(검색일: 2016. 10. 10).

105) 이에 대한 논의는 Baldwin, Ito, and Sato(2014)를 참고할 것.

한 국경통제가 전면 철폐되었고,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중간재 교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106] 둘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EU의 회원국 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유럽-중동부유럽 간의 무역-투자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역외국 기업들도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범지역적 무역협정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투자를 기반으로 지역 가치사슬이 형성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무역의 지역화에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

GVC의 확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GVC 관련 실증연구는 최근 수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10년 이후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실증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OECD-WTO는 2012년 이후 부가가치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자간, 산업간 부가가치 기준 무역량을 구한 후 실제 관세통계상의 무역량과 비교함으로써 GVC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07]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GVC의 확산은 통상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별, 부품별로 교역이 더 세분화되어 진행되면서 과거 최종재 중심의 통상질서가 크게 바뀌었다. Orefice and Rocha(2014)에 따르면 이른바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으로 분류되는 포괄적 무역협정이 확산된 이유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와

106) 이에 대한 내용은 IMF(2013)을 참고할 것.

107)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Timmer *et al.*(2013); Baldwin and Lopez-Gonzalez (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IMF(2013).

관련지어 설명한다. 최종재 중심에서 중간재 또는 공정단계 중심으로 교역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관세철폐 위주에서 다양한 규제를 포괄하는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무역협정의 초점이 변화한 것이다. Antras and Staiger(2012)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상호성 등 기존의 GATT/WTO 원칙만으로는 다양한 통상이슈를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WTO Plus, WTO beyond 등의 이슈가 등장하게 된 점은 GVC의 확산에 따른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8)]

GVC의 확산은 무역개방/보호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최종재 위주의 통상협상에서는 산업별 무역개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생산 및 공정의 분할화(fragmentation)는 무역개방/보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중간재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산업 내에서도 개방에 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등장하게 되어,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수출업자와 보호주의 성향을 갖는 국내산업의 입장이 한 산업 내에서 혼재하고, 이는 양측의 영향력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점차 많은 중간재 수입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계층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조달 및 자본관리, 데이터 이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통상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였다.

동일한 현상은 서비스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서비스무역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각국의 서비스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개방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Mode 3)의 안정성을 확보

108) WTO Plus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 WTO 체제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WTO beyond(또는 WTO extra)는 WTO 체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RTA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정보보호, 자본이동, 이민, 산업협력 등의 이슈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Horn, Mavroidis, and Sapir(2009)을 참고할 것.

그림 5-1. GATS의 양허와 각국의 실제 양허수준 간의 차이

(단위: 0~1사이의 숫자. 0: 완전비개방, 1: 완전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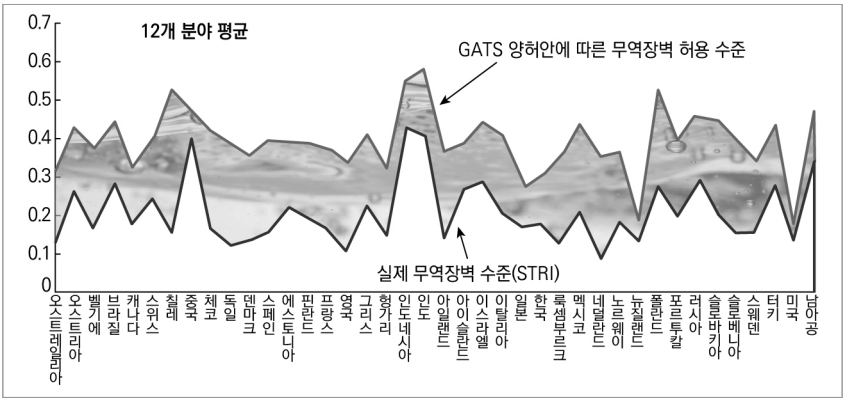

주: 12개 분야는 시청각 오디오 분야 3개, 직업서비스 분야 4개, 건설, 컴퓨터, 유통, 철도 및 도로 운송서비스로 구성되었음.
자료: OECD(2014), p. 9, 재인용: National Board of Trade(2015), p. 10.

해주었으나, 확대된 GVC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Hoekman(2008)에 따르면 GATS를 통한 개방은 실제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수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5-1 참고). 이는 RTA 차원에서 서비스 개방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단일시장의 발전과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은 여타 지역에 비해 GVC 활용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는 다른 지역 국가와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GVC 활용도는 주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발달시킨 중동부유럽과 아일랜드가 높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GVC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림

그림 5-2. 총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의 비중(EU 28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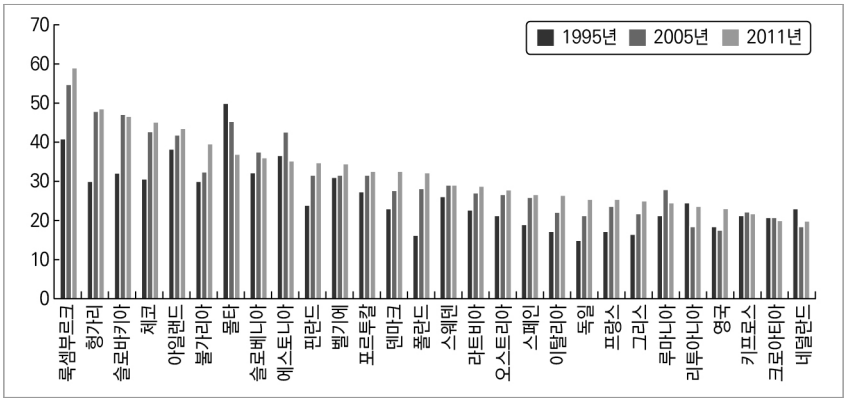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5-2]와 [표 5-1]은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를 1995년, 2005년, 2011년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 5-1.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단위: %p)

헝가리	18.55
룩셈부르크	17.96
폴란드	16.28
슬로바키아	14.97
체코	14.81
독일	10.68
핀란드	10.63
불가리아	9.92
덴마크	9.5
이탈리아	9.26
그리스	8.7
프랑스	7.84
스페인	7.72
오스트리아	6.37
라트비아	6.04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그림 5-3. 총 수출 중 해외생산 부가가치의 비중(비EU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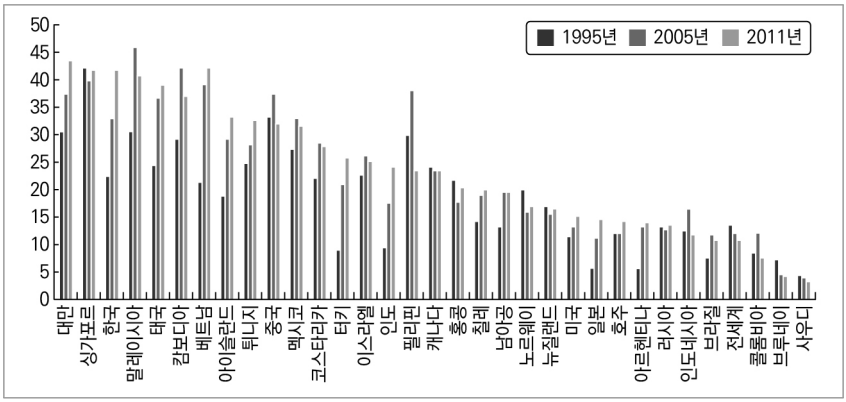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GVC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5~2005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2005~11년의 증가폭은 다소 미미한 편이다. 이는 유럽 차원의 GVC 확

표 5-2. 비EU 국가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단위: %p)

캄보디아	24.09
한국	19.37
터키	16.79
베트남	14.95
인도	14.74
태국	14.7
아이슬란드	14.35
대만	12.86
말레이시아	10.12
일본	9.05
아르헨티나	8.34
튀니지	7.74
남아공	6.3
칠레	6.03
코스타리카	5.75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대가 200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우 공통적으로 2000~05년의 기간에 GVC 활용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이 기간에 EU의 회원국 확대가 진행되면서 서유럽-중동부유럽 간의 무역-투자 네트워크가 형성된 점과 관련이 깊다.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2011년의 기간 중 가장 높은 GVC 활용도 상승(%p 기준)을 기록한 EU 회원국 5개국 중 4개국은 이른바 V4로 불리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이다. 셋째, 영국과 같이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GVC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3]과 [표 5-2]는 같은 기간 비EU 국가의 GVC 활용도 변화를 나타낸다. 유럽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공통적인 점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GVC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ASEAN의 제조업 중심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점차 역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배경으로 GVC 활용도가 크게 상승하였다.[109]

그림 5-4. 가치사슬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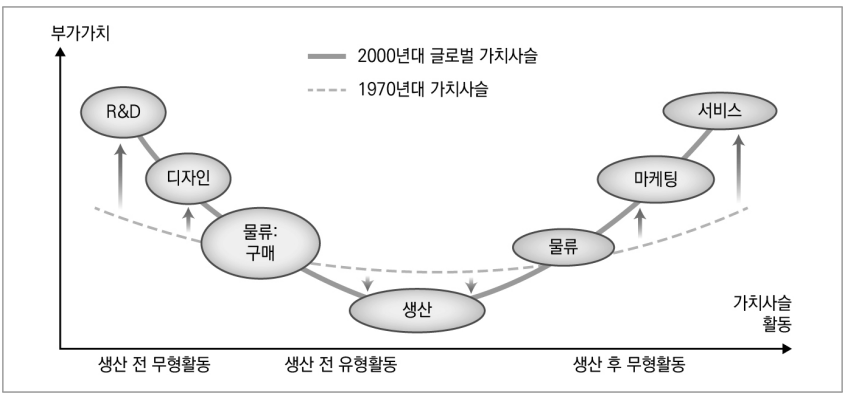

자료: Gereffi(2005), pp. 166-168; 전응길(2013), p. 42, 재인용: 강유덕 외(2014), p. 253.

109) 가령 캄보디아의 경우 1995년에는 동아시아(한중일+ASEAN 회원국) 국가 중 GVC 활용도가 제일 낮았으나, 2005년에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으로 급부상하였다.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GVC 확산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는 수출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기계장비의 조작이나, 조립에 투여되는 노동의 양은 감소한 반면, R&D, 디자인,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그림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의 가치사슬을 나타내는 일명 '스마일 커브'에서 서비스는 생산활동을 전후한 양쪽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에 투입되며,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감소하는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조업 부문에서의 감원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고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 광학장비 등 첨단 제조업의 경우 높은 R&D 비중으로 인해 사실상 투입되는 서비스의 90%가 지식 집약적 서비스이다.

제조업 수출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중은 EU의 경우 55~60% 수준으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EU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일본은 50%, 한국과 중국은 40% 수

그림 5-5. 총 수출 중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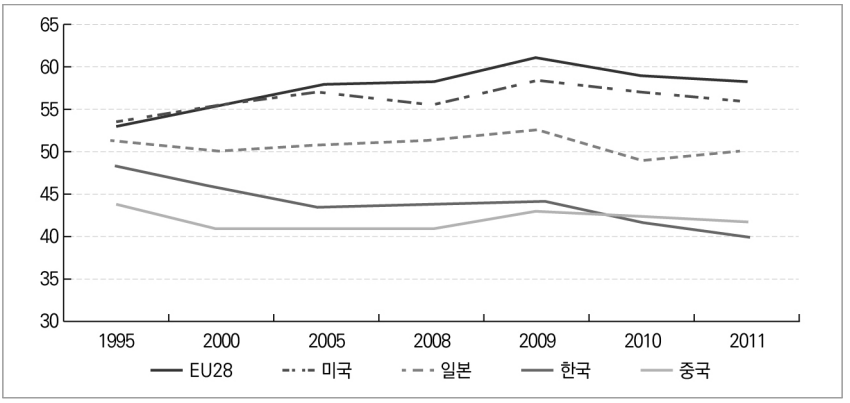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그림 5-6.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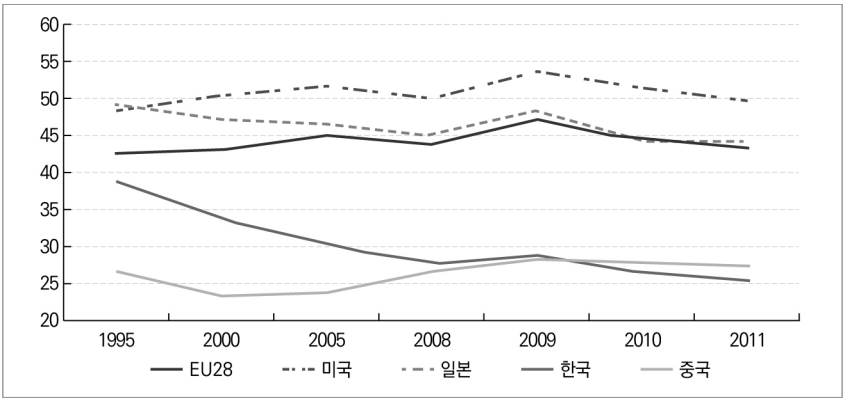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준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비중에서 EU는 미국,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국은 낮은 편이다.110) 제조업 수출에 포함되는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경우 EU는 한국, 중국과 함께

그림 5-7. 총 수출 중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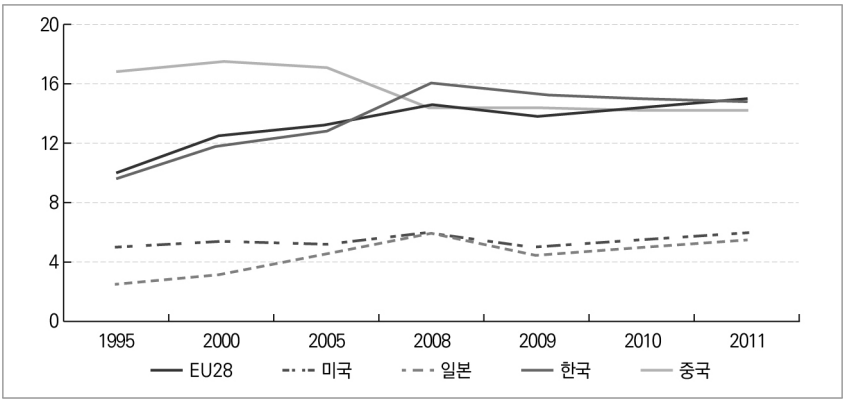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110)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5-8.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EU 28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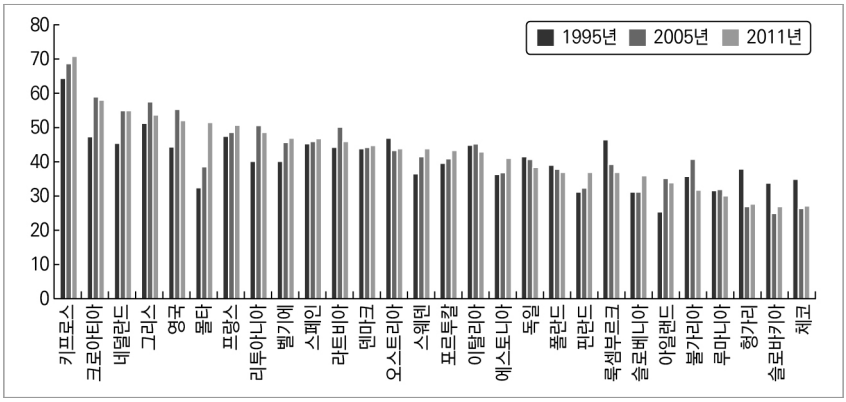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 중간재가 국내생산품으로 구성되는 미국, 일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차원에서의 GVC 활용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EU 회원국별로 검토할 경우 국가별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5-8]과 [그림 5-9]는 각각 총 수출에 투입되는 국내생산,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을 보여준다. 이 중 수출

그림 5-9. 총 수출 중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EU 28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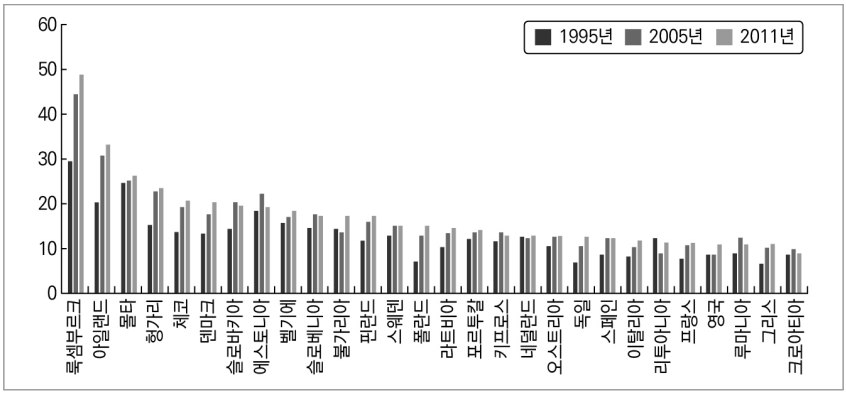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표 5-3.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단위: %p)

크로아티아	10.63
네덜란드	9.5
아일랜드	8.69
리투아니아	8.5
영국	7.85
벨기에	7.14
스웨덴	7.14
키프로스	6.52
핀란드	5.97
에스토니아	4.6
슬로베니아	4.45
포르투갈	3.46
프랑스	3.39
그리스	2.62

주: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임.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표 5-4.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 변화(1995~2001년)

(단위: %p)

아일랜드	12.72
헝가리	8.36
폴란드	7.94
덴마크	7.09
체코	6.96
핀란드	5.71
독일	5.52
슬로바키아	5.28
라트비아	4.32
그리스	4.15
스페인	3.72
이탈리아	3.62
프랑스	3.35
벨기에	2.82

주: 총 수출 중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임.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그림 5-10. 총 수출 중 해외생산의 부가가치와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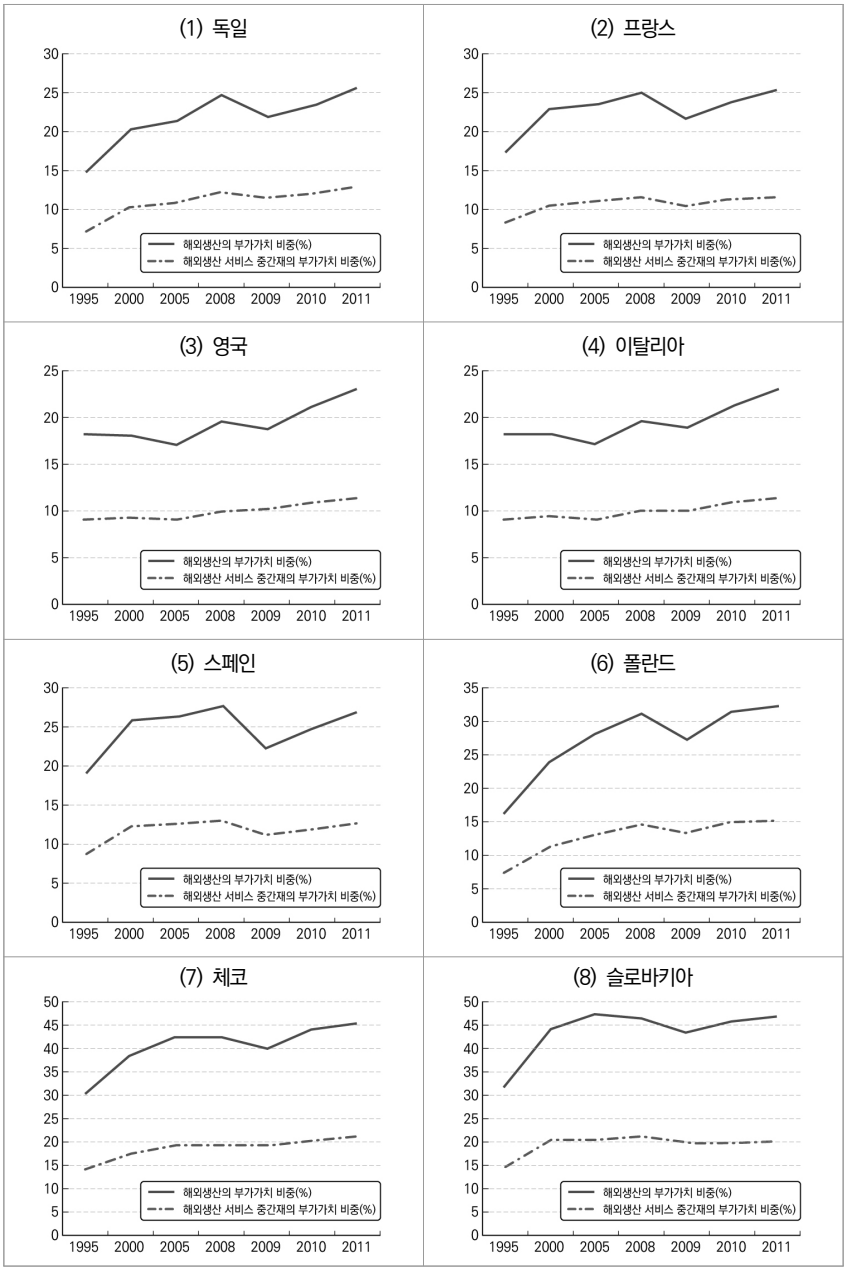

그림 5-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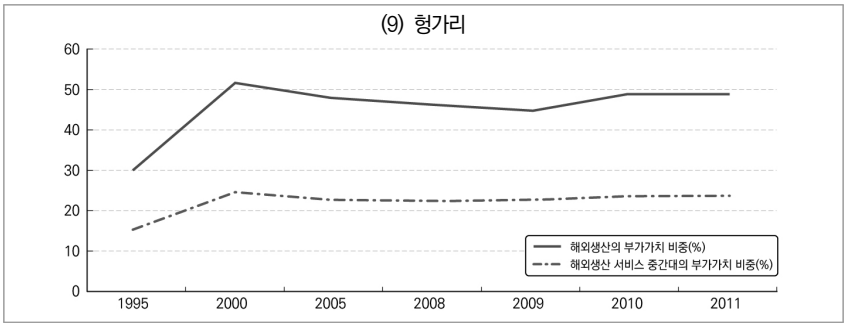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품에 대한 해외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은 GVC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비중은 주로 서비스산업이 강한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며, 외자기반의 제조업 위주인 중동부유럽 국가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가령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유통), 그리스(운송), 영국(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총 수출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50% 이상인 반면 중동부유럽의 V4 국가는 30% 미만이며, 1995~2011년의 기간 중 국내생산 서비스 중간재 투입 비중이 감소하였다.

국내생산 서비스 투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그림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생산 서비스 투입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서비스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상품시장과 달리 서비스시장의 경우 EU 차원에서의 단일시장 형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그림 5-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해외생산 중간재는 50% 정도가 서비스 중간재로 완만하지만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중간재 활용에서도 GVC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본국의 입장에서 GVC의 활용은 외주화(outsourcing) 또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off-shoring)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국내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 수직적 통합에 따라 본국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활동이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11] 유럽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GVC의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Timmer *et al.*(2013)에 따르면 GVC 활용 확대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고숙련 고용 비중의 증가와 서비스분야의 고용량 증가와 병행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

그림 5-11. 1995~2008년 GVC 관련 고용량 증감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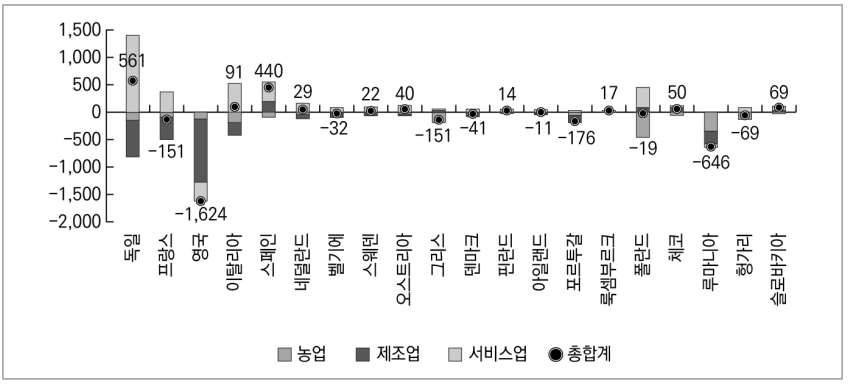

주: 숫자는 총 합계.
자료: Timmer *et al.*(2013), p. 48에서 정리.

111) GVC 참여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연구와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GVC 참여는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증가를 의미하는바, GVC 참여는 고용창출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Shepherd(2013)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선행연구를 제시한다. 반면에 선진국 입장에서 GVC 참여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모호하다.

표 5-5. 품목고급화지수(PSI) 도출의 예

분류	품목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높은 PSI	항공기(3530)	13,299	24,102	32,523	28,765	37,828	51,272	61,035
	측정기기(3312)	12,095	22,581	29,853	27,821	36,692	40,849	43,365
	의료장비(3311)	11,675	22,369	29,073	27,353	35,268	39,335	42,183
	컴퓨터(3000)	11,303	21,959	28,439	26,506	33,776	38,165	40,774
	자동차(3591)	11,102	21,936	28,343	26,395	33,742	37,900	40,524
중간 PSI	전기기기(3210)	9,807	19,760	24,354	21,668	27,173	29,339	31,143
	TV, 라디오(3230)	9,460	19,462	23,320	20,118	24,667	25,925	28,422
	케이블(3130)	9,140	18,608	21,983	19,385	23,801	25,470	26,771
	철강(2710)	8,915	18,028	20,802	18,788	23,154	23,171	25,468
낮은 PSI	가죽(1911)	7,149	13,989	15,932	13,636	17,731	17,440	19,035
	섬유(1711)	7,072	13,802	15,734	13,212	16,035	16,595	18,424
	정제석유(2320)	6,545	13,349	15,045	11,077	14,771	15,940	17,745
	의류(1810)	5,357	11,127	11,658	9,391	11,184	12,561	14,817
	신발류(1920)	5,316	11,011	11,272	9,258	10,398	11,876	9,767

주: 84개국, 102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
자료: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에서의 고용이 확대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독일과 스페인이다. 이로 인해 [그림 5-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총 고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2] 한편 GVC의 활용으로 인해 유럽국가의 전반적인 노동구조는 고숙련 노동(high-skilled)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가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113]

112) 일부 국가에서는 GVC 관련 총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국을 제외할 경우 농업부문에서의 고용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에서는 농업부문이 축소되면서 GVC 관련 농업고용자의 수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GVC 관련 총 고용이 감소하였다.

113) Timmer *et al.*(2013), pp. 29-30.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VC의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있어서 가능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되는 것은 산업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EU 회원국은 탈제조업화 현상과 더불어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큰 과제로 안고 있다.

지금까지 EU 회원국의 GVC 활용 정도를 TiVA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EU 회원국의 수출구조 고도화 여부를 측정해보았다.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Kwan(2002), Thorbecke and Pai(2013), 오세환, 심혜정(2013)에 따라 품목고급화지수(PSI: Product Sophistication Index)와 국가고급화지수(CSI: Country Sophistication Index)를 도출하여 국가별, 시기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PSI와 CSI는 [식 5-1]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 PSI는 기준 대상이 되는 국가그룹의 품목별 총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 비중을 구한 후, 이에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를 곱해서 합산한 값이다. 각 국가의 1인당 GDP를 품목별 총 수출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곱한 것은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가령 자동차와 의류의 PSI가 각각 3만과 1만 5,000으로 계산될 경우, 이는 자동차와 의류가 각각 1인당 GDP 3만 달러와 1만 5,000달러인 국가가 수출하는 품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CSI는 구해진 PSI를 바탕으로 각 PSI에 해당품목의 수출비중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구한다. 이 또한 가중평균의 개념이다.

$$PSI_j = \sum_{j=1}^{n}\left(\frac{X_{ij}}{X_{nj}} \times GDPP_i\right)$$

$$CSI_i = \sum_{i=1}^{m}\left(\frac{X_{ij}}{X_{it}} \times PSI_j\right)$$

X_{ij}: 국가 i의 품목 j 수출
X_{nj}: 전체 국가(국가그룹)의 품목 j 수출
X_{it}: 국가 i의 총 수출
$GDPP_i$: 국가 i의 1인당 국민소득

[식 5-1]

본 연구에서는 CEPII-Chelem 데이터를 활용하여 PSI와 CSI를 계산하였다. PSI 계산에 활용된 국가의 수는 84개국이며, ISIC 분류를 기반으로 102개 산업품목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국가별 CSI의 변화는 [그림 5-12]와 [표 5-6]에 제시하였다. 1995년 국가별 CSI는 주로 서유럽 국가가 높고, 중동부유럽 및 남유럽 국가는 낮은 양상을 보인다. 가령 1995년 CSI는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가 250 전후를 기록하면서 200 전후 또는 그 이하를 기록한 중동부유럽 및 남유럽(그리스, 포르투갈)에 비해 현저히 높다. 반면에 CSI는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는데, PSI는 1인당 GDP에 기반를 근거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증가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1995~2014년에 CSI가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국가들은 주로 중동부유럽 및 남유럽 국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서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CSI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수렴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렴화가 이루어진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EU 역내에 형성된 무역・투자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국

표 5-6. 1995~2014년 국가고급화지수(CSI)의 변화율

(단위: %)

그리스	71.2
아일랜드	64.0
라트비아	59.7
루마니아	55.2
포르투갈	53.0
에스토니아	49.6
벨기에	48.5
폴란드	48.1
영국	46.9
핀란드	45.9
프랑스	45.3
헝가리	44.7

자료: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그림 5-12. EU 회원국의 국가고급화지수(CSI)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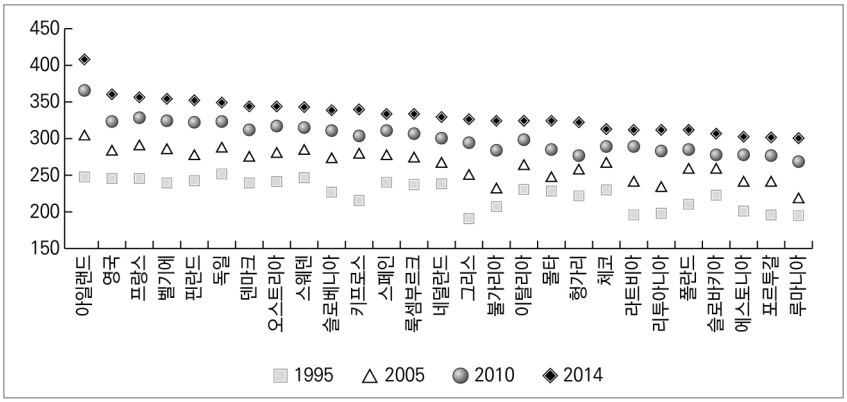

주: 84개국, 102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 단위조정을 위해 CSI를 구한 후 1,000으로 나누었음.
자료: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가별 산업특화의 변화를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3]과 [그림 5-14]에서는 국가별, 시기별 고급화 품목별 수출비중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에 PSI에 따라 수출비중의 분포를 나열하였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고급품목에 특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그림 5-13]의 독일, 영국, 아일랜드는 1995년에 CSI가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CSI가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그림 5-14]는 2014년의 국가별 PSI 분포를 나타낸다. 독일의 경우 PSI의 분포가 1995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나, 영국은 더 오른쪽으로 치우침이 나타났으며, 아일랜드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특화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제약제품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PSI로 표시된 제약제품의 상대적 부가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114]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PSI의 분포가 1995년에 비해 오른쪽으로

114) 제약제품 수출이 아일랜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0.0%에서 2014년 41.4%로 크

그림 5-13. 고급화 품목별 수출비중 분포(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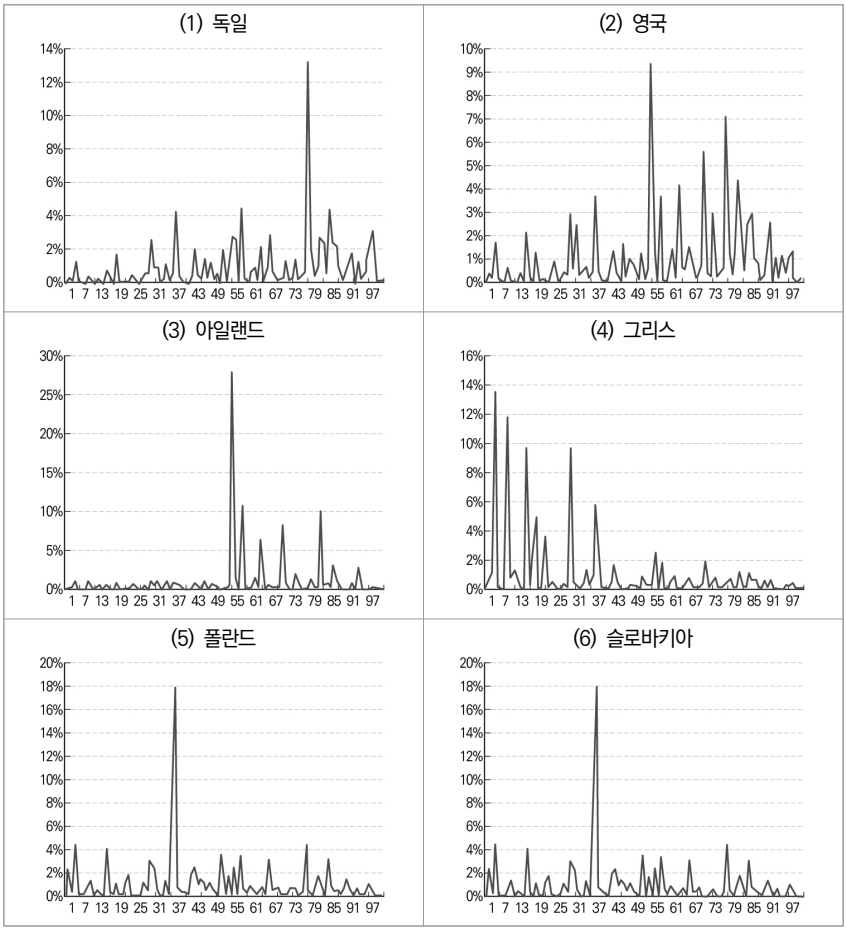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102개 품목의 PSI를 의미하며 순차적으로 나열.
자료: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이동하였으나 앞의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PSI 제품에 대한 특화 정도가 강하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PSI가 높은 쪽으로 변화하였으나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의 1차 산업 및 경공업 제품 위주의 특화에서 중화학 제품인 정제석유에 대한 특화가 확대되면서 나타났다.[115] 이와 같은 변화는 비교적 다양한 품목

게 증가하였다. CEPII-Chelem, http://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

그림 5-14. 고급화 품목별 수출비중 분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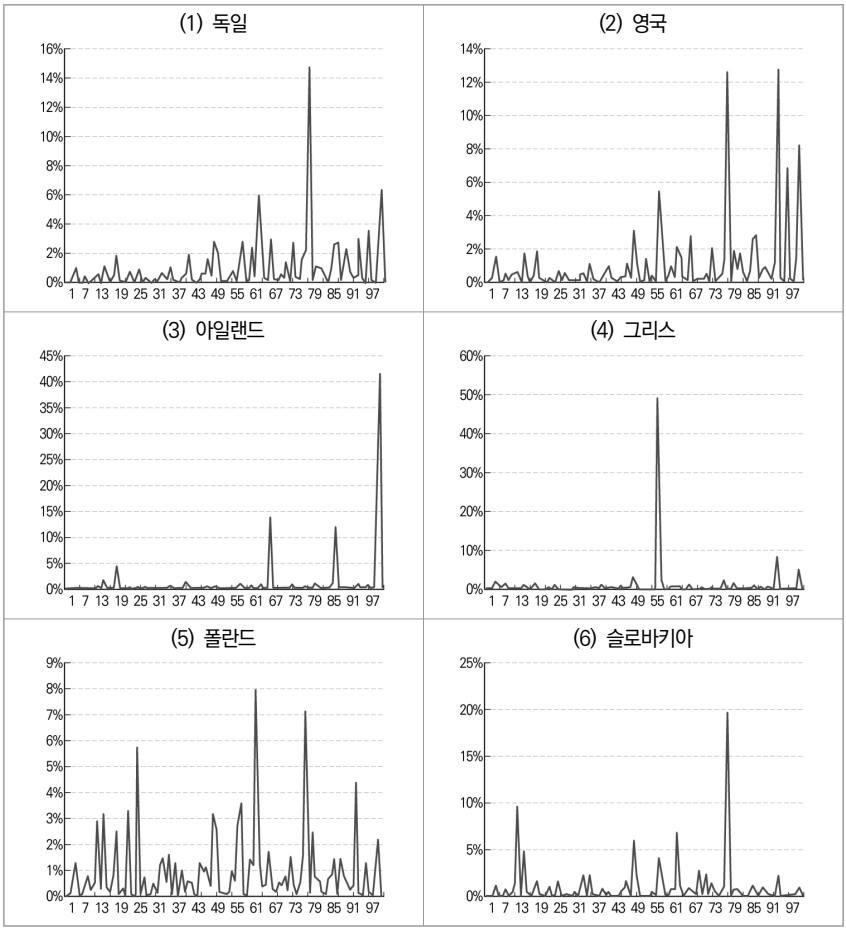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102개 품목의 PSI를 의미하며 순차적으로 나열.
자료: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군에 걸쳐 수출비중이 증가한 폴란드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도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출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115) 그리스의 정제석유 수출은 1995년 총 수출의 9.7%에서 2014년 49.1%로 크게 증가하였다. CEPII-Chelem 데이터, http://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부품 및 공정단위에 따라 무역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무역 원활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제도, 정책 등의 차이도 GVC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약간의 무역장벽이 형성되더라도 그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단위를 감안하고,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하는 무역 원활화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GVC 활용을 위해 통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OECD(2013, pp. 2-3)는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글로벌 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둘째,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제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GVC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간 상이한 기준의 차이는 무역비용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간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율하거나, 상호 인정함으로써 기준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안은 GVC의 원활한 운영이 서비스산업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부품 및 직무단위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송 및 금융, 통신, 기타 사업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조품 생산 시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국경간 무역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 중간재를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GVC 활용이 국내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주화(outsourcing)나 해외생산(off-shoring)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의 고기술화와 함께,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서비스 포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중간재 수출은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차세대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GVC의 활용 및 개념화는 이미 오래 전에 등장하였으나, GVC의 활용이 정책목표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GVC 활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그리고 상기의 정책방향을 포괄하는 통합적 통상정책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조합한 통상정책에서 GVC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GVC 활용이 확대되는 시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괄적 FTA가 추진되는 시점이 중첩된다는 점은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국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FTA는 이른바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을 지향하는 FTA로서 기존 WTO에서 논의되는 주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통상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통상의제를 벗어나는 과거와 상이한 의제가 FTA에 포함되어 왔다.

Horn, Mavroidis, and Sapir(2009)는 FTA 협상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의제에 대해 과거 WTO 내에서 논의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WTO plus'와 'WTO extra'로 구분을 한다. WTO plus가 관세,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표 5-7. FTA에 나타난 WTO plus와 WTO extra 관련 분야

	분야	
WTO plus	• 농산품 및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 관세행정 • 수출세 • 동식물검역(SPS) • 기술무역장벽(TBT) • 국영무역기업(STE) • 반덤핑 • 상계조치 • 국가보조금 • 공공조달 • 무역관련 투자조치 • 서비스 무역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내용
WTO extra	반덤핑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규제
	경쟁정책	반경쟁적 사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독립적인 반경쟁 방지 기구의 설립과 운영
	소비자 보호	소비자보호법의 조화, 정보 및 전문가 교환, 훈련
	데이터 보호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자본이동	자본이동의 자유화, 새로운 제한조치의 금지
	노동시장 규제	국내 노동시장 규제, 국제 노동기구의 규약 인정 및 집행
	지적재산권	TRIPS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 비준
	규제의 조율	EU의 규제를 국내 법제화
	시청각 오디오	관련 산업 촉진 및 공동제작 추진
	시민보호	보편적 범위의 법률집행
	혁신정책	R&D 관련 상호 지원정책 참여, 기술이전 촉진
	문화협력	공동제작 및 지역문화 촉진
	경재정책 대화	아이디어 및 견해 교환, 공동연구
	교육, 훈련	교육향상을 위한 조치
	에너지	정보교환, 기술이전, 공동연구
	금융지원	금융지원 및 행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	질병 모니터링, 보건 발전, 정보시스템, 정보교환
	불법이민	불법이민의 예방 및 감독
	산업협력	산업현대화를 위한 지원,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정보화 사회	정보 교환, 신기술 전파, 훈련
	연구, 기술	공동연구, 연구자 교환, 공공 민간 파트너십
	세제	조세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자료: Horn, Mavroidis, and Sapir(2009), p. 15에서 발췌, 정리.

이슈라면, WTO extra는 경쟁정책, 규제의 상호조율, 혁신정책 등 WTO에서 논의되던 통상이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들이다. FTA를 통해 WTO plus의 이슈를 추구하고, WTO extra의 추진은 GVC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1) EU의 신통상정책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로운 통상정책인 'New EU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를 발표하였다.[116] 이 통상백서는 2015~20년의 기간 중 EU가 추진할 통상정책의 중점과제를 담고 있으며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방향(FTA 추진)이 같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통상정책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목적 및 추진일정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의 통상정책은 2006년, 2010년에 발표한 기존의 통상백서와는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구성적 측면에서 2015년 통상백서의 특징은 통상이슈별 배경 설명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둘째, 이 통상백서는 EU가 2006년부터 추진해온 포괄적 FTA 정책인 '글로벌 유럽 이니셔티브(Global Europe Initiative)'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까지 달성한 바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FTA를 계속 추진하되, 특히 미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통상협상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이 통상백서는 통상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EU 체제에 대한 변화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006년의 통상정책이 해외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성 강화정책을 추구하였다면, 2015년의 통상정책은 무역의 혜택을 광범위한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확산효과에 초점을 두

116) European Commission(2015b).

고 있으며, 이는 통상과 여타 정책 영역과의 조합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지는 통상백서의 제목을 '모두를 위한 무역: 더 책임있는 통상무역, 투자정책을 향하여(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로 정한 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117] 또한 FTA에서 근로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15년의 통상백서는 EU 통상정책의 3대 원칙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e)', '유럽의 가치(Values)'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효과성' 제고의 원칙은 효율적인 통상투자정책을 지향하는 가운데, 특히 GVC의 부상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118]

2)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정책

2015년에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이 GVC 활용을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VC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독립적인 통상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EU의 통상정책 중 원활한 GVC 활용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추진되는 정책은 아래와 같다.

가) 서비스 무역의 촉진

EU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표 5-8 참고).[119] 2015년 EU 28개

---

117) 2015년 통상백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서의 2장을 참고할 것.

118) 둘째 원칙인 투명성은 과거 EU의 통상정책 등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어있다는 지적과 만성적으로 지적된 '민주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EU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통상협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적이다. 셋째 원칙인 유럽의 가치는 통상정책과 대외정책을 연계하는 것으로 리스본조약(2009년 12월 발효) 이후 EU 대외정책의 체계변화와 관련이 깊다. 리스본조약은 통상정책을 EU의 대외정책의 한 부분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정책이 EU의 대외정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119) [표 5-8]에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경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룩셈부르크는 유럽대륙 내 금융 중심지이며, 네덜란드는 제조업 수출은 물론, 서비스 수출

표 5-8. 2015년 EU 회원국의 서비스 역외무역

(단위: 억 유로)

순위	국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순위	국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영국	1,888	955	934	9	폴란드	116	63	53
2	스페인	370	176	194	10	오스트리아	130	87	42
3	프랑스	991	809	182	11	포르투갈	78	42	36
4	스웨덴	304	189	115	12	독일	1,205	1,180	25
5	덴마크	305	222	84	26	룩셈부르크	246	251	-5
6	벨기에	317	244	73	27	네덜란드	622	766	-145
7	그리스	103	42	61	28	아일랜드	513	848	-335
8	이탈리아	398	339	59		EU	8,112	6,605	1,507

주: 스페인의 자료는 2014년 기준.
자료: Eurostat(검색일: 2016. 10. 10).

회원국은 총 8,112억 유로의 서비스를 수출하였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는 1,507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GVC의 확산 속에서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가 증가하고, EU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의 상호개방 확대는 EU 경제의 서비스 수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GVC상에서의 전방참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표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가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주요 품목은 금융 및 통신・컴퓨터・정보, 사업서비스와 같이 GVC상의 상위 또는 하위에 위치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 서비스의 원활화는 GVC의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특히 상당수의 서비스 수출이 3국 주재(Mode 3)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EU는 해외투자를 통한 서비스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

이와 같은 해외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은 다자간 협상과 양자 FTA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TiSA 협상을 진행 중인 WTO 23개 회원국 중 하나로 미국, 호주와 함께 TiSA 협상의 순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다자차원의

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바, 실질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아닌, EU 역내외 무역의 수출입 통로 역할에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는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수출기지 역할에서 역외로부터의 서비스 중간재 수입이 많다.

표 5-9. 2014년 EU 분야별 서비스 수출

(단위: 억 유로)

순위	분야(대분류 기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금융서비스	782	381	401
2	통신 · 컴퓨터 · 정보 서비스	944	556	388
3	기타 사업서비스	1,999	1,686	313
4	보험 · 연금 서비스	335	131	204
5	운송	1,415	1,228	187
6	제조업관련서비스	206	64	142
7	여행	1,086	980	106
8	건설	134	50	84
9	유지 · 보수 서비스	101	78	22
10	정부재화, 서비스	71	64	8
11	개인 · 문화 · 여가 서비스	80	117	-36
12	지적재산권 사용료	494	684	-190
-	총 서비스	7,649	6,020	1,629

자료: Eurostat(검색일: 2016. 10. 10).

포괄적 서비스무역 협상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120] 또한 EU는 현재 진행 중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에서도 서비스 분야를 다룰 것을 요구해왔다.[121] 한편 양자 FTA를 체결할 때 EU는 서비스 분야 개방을 기존의 GATS 양허안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양허 폭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도모하고 있다.[122]

나)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무역의 형식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전제로 한다. EU는 역내 디지털 관련 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연맹(Digital Union)을 추진해왔다.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이

120) European Commissio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tisa(검색일: 2016. 10. 10).

121) European Commission(2015b), p. 11.

122)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 · EU FTA 이후 EU가 추진한 선진국과의 FTA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전 등의 작업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 부분으로 특히 GVC의 활용에서 매우 핵심적인 분야이다.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백서에 따르면,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유럽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EU 역외의 불투명한 원칙 및 정부의 간섭, 데이터의 현지 저장 요구 등을 EU 기업의 GVC 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1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IT 관련 규제의 상호인정, 표준의 조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 분야의 글로벌 규범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양자 FTA와 TiSA 협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124]

다) 인력이동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의 일시적 이동(서비스 무역 Mode 4)은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서비스 무역 Mode 4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나, 미국의 서비스 수입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2007년 총서비스 수입 중 23.1%가 Mode 1과 Mode 4를 통한 수입으로 추정된다.[125] 따라서 역외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을 위해서 Mode 4를 통한 무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인력이동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백서에서 EU는 우선 상품, 장비와 관련된 인력이동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

---

123) European Commission(2015b), p. 12.

124) *ibid.*, p. 12.

125) 미국의 2007년 서비스 수입통계를 대상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Mode별 서비스 수입비중은 Mode 1+4, Mode 2, Mode 3이 각각 23.1%, 10.2%, 66.7%로 나타난다. 이 자료는 미국의 수입기준이며, Mode 1과 Mode 4를 분리해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미국과 EU가 산업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Mode 1을 통한 무역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EU의 Mode 4 무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Maurer and Magdeleine(2010), http://artnet.unescap.org/tid/artnet/mtg/reformservice_bp3.pdf(검색일: 2016. 10. 5), p. 13.

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26] 가령 EU산 장비를 역외국에 특혜관세를 통해 수출하고, 이에 대한 엔지니어링 또는 유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서비스 제공에서도 특혜대우를 확보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성을 전제로 상대국 전문가에게도 이동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직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반면 한・EU FTA의 이행상황이나, EU가 추진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감안할 때, 전문직 이동의 확대와 전문직의 상호인정은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력이동의 경우 EU 역내에서조차 회원국간의 잠재적 갈등 소지가 표출되었던 만큼, 무역상대국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할 이민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백서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위한 인력이동이 '일시적(temporary)'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이민어젠다(European Agenda for Migration)의 맥락 속에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EU 집행위원회가 득실을 감안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127]

라) 국제 규제 협력의 강화

EU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때 역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력하고 규제 부문의 수렴과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EU의 규제는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EFTA 회원국, EU의 근린 국가 및 구 식민지 국가에도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규제수립에서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역외 EU의 규제를 '규제수출' 정책을 통해 펼쳐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0년 발표된 통상백서를 통해 명시된 바 있다.[128] EU의 규제를 해외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통상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

126) European Commission(2015b), p. 12.

127) *ibid.*, p. 12.

128) 2010년 11월에 발표된 EU의 통상백서에 관한 주요 내용은 강유덕(2011)을 참고할 것. 통상백서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할 것. European Commission(2010b).

표 5-10. 산업표준화기구의 예

산업표준화기구	주요 업무
유엔유럽이사회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이 이사회의 자동차이사회는 자동차 부문의 EU 표준을 수립
국제조화컨퍼런스(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 EU 집행위원회, 미국식약품안전국(FDA), 일본보건노동복지부에 의해 설립 • 제약품 분야의 국제기준 조화를 담당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 국제적 식품 기준의 개발 • 식품 기준 작업의 국제적인 조화 및 조정 작업을 담당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표준을 조정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을 향상

자료: European Commision(2015b), p. 1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별도 조사를 통한 정리.

GVC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수렴 및 협력은 무역협상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EU는 거대시장으로서의 '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양자 FTA 협상에서 규제이슈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EU 집행위원회는 통상백서를 통해 무역협상에서 규제이슈를 최우선의 협상안건으로 선정하고,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EU의 영향력이 강한 산업별 표준화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의 규제수렴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마) 지적재산권 보호·혁신 보호

European Patent Office(2013)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은 EU 총고용의 35%와 부가가치생산의 39%를 차지하며, EU 총 역외수출의 90%를 차지한다.[129] 따라서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EU 경제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129) European Patent Office(2013), p. 9, pp. 61-62.

그림 5-15. 지재권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EU 내 고용(2010년)

(단위: 총 고용,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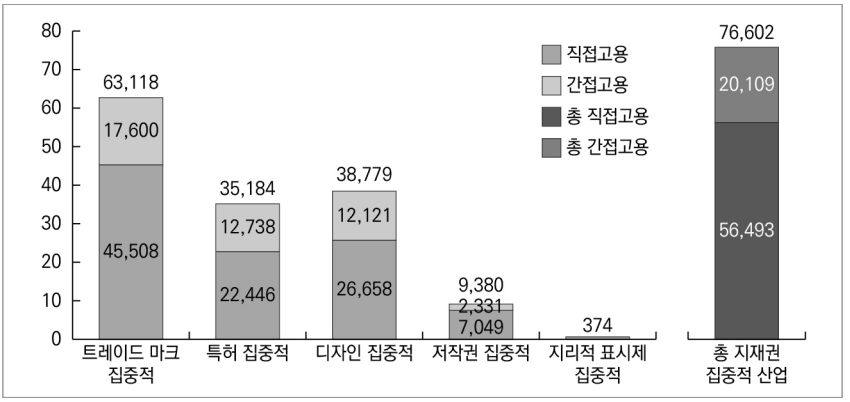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Patent Office(2013), p. 61.

2010년에 발표된 EU의 통상백서에서는 EU가 추진할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3국에서의 EU 지식재산권 보호를 정한 바 있다.130) 이를 반영

그림 5-16. 지재권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EU 내 부가가치 생산(2010년)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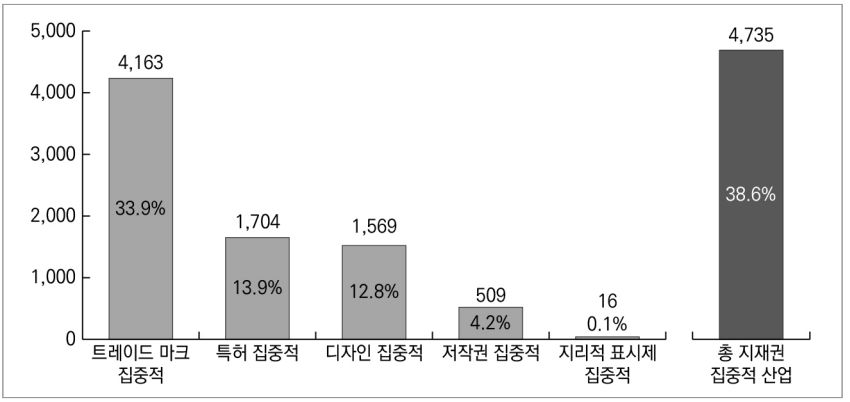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Patent Office(2013), p. 62.

130) 2010년 통상백서에서 제시된 통상정책의 6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DDA 협상의 지속과 FTA의 추진 ②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규제 수렴・협력의 추구 ③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U 기업의 접근성 개선 ④ 새로운 해외투자정책의 수립 ⑤ 제3국에서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⑥ 수출규제조치 개혁. 자세한 내용은 강유덕(2011)을 참고할 것.

하여 이후 체결된 EU의 양자 FTA는 다자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온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131]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백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기업 비밀 등 모든 종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32] 이러한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는 WTO와 양자 FTA에서 병행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체결되는 FTA에서는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무역파트너와의 모조품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GVC의 확대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EU의 FTA 전략이 GVC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U는 관세동맹으로서 단일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통상정책을 갖고 있으나, 임금수준과 국가간 산업특화 정도의 차이로 인해 역내외 GVC 활용에서 독특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EU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과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에 따른 산업 재편 과정에서 역내 GVC 활용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무역・투자 확대에 따른 역외국과의 GVC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EU의 GVC 활용의 특징은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부유럽 국가의 GVC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

131) 한・EU FTA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32) European Commission(2015b), p. 14.

이 장에서는 EU의 GVC 활용전략을 검토하기에 앞서, EU의 FTA 정책이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EU의 FTA가 WTO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WTO plus나 WTO extra의 의제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인을 점차 활발해진 GVC의 활용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GVC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Database)가 정리, 개발되면서 활성화되었으나, GVC의 개념 및 활용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백서는 그 정책방향에서 2010년에 발표된 통상백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GVC의 활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133] GVC의 활용도 제고는 통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책이 상호 조합되는 가운데 추진되며, 이 장에서는 서비스 무역 촉진, 전자상거래, 인력이동, 규제협력,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EU의 통상정책은 큰 갈림길에 서있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했던 미국과의 TTIP이 일부 분야별 협상에서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해 EU 통상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잔여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입장에서 EU 역내의 무역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역외무역협상에 비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 EU가 보였던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은 당분간 추진동력을 다소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EU 역내기업뿐만 아니라, 역외기업도 EU 체제의 변화가 기업차원의 GVC 운영변화에 영향을 줄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때, EU의 통상정책은 FTA의 외연을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EU 체제의 재편이 GVC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133) 2010년 통상백서에서는 Global Value Chain의 용어 또는 개념이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2015년의 통상백서에서는 GVC가 11차례 언급되고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1. 요약

통상정책에서 배타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EU는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고 있었다. 이는 복수의 회원국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공동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것이 초국가기구로서 EU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EU의 FTA 전략은 신통상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잘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FTA의 외연을 넓히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의 규범의 글로벌 규범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역외

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의 규제 수렴 과정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표준을 정하고 이를 해당되는 품목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전통적인 규제 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규정하고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 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EU FTA가 좋은 사례가 되는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캐나다 CETA, EU・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EU가 규제 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FTA는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이다. 이 협상을 통해서 EU는 자신의 규범을 미국에서 인정받고 규제의 조화나 상호인정을 통하여 EU 규범의 국제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규제 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메가 FTA에서의

규제의 글로벌화는 아직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평가체계가 네 단계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수행하는 영향평가, 협상 중에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평가, 그리고 발효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영향평가가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분야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 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이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 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로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EU・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 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 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체결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인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 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만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

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했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 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2. 정책 시사점

EU는 신통상정책 수립 이후 개방도가 높고 포괄적인 차세대 FTA 전략을 신통상정책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FTA 전략에서는 신통상정책의 목표 중에서 EU 규범 및 표준의 확산, 역내 고용시장에 대한 고려, 그리고 GVC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정책 이슈를 추진해왔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EU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

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 등 미래기술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의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 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체제 및 고용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 경제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 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개방이 더 이상 경제적인 이슈만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EU의 평가체계는 진일보한 것이며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더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GVC 활용 극대화

우리나라는 현재 54개국과 총 15개의 FTA를 발효하였다. 특히 EU, 미국, 중국과 순차적으로 대형 FTA를 발효함으로써 가장 활발하게 FTA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명시적으로 GVC 활용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2013년에 발표된 '신통상로드맵'은 지역경제 통합에 있어서 중심축(linchpin)이 될 것을 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GVC 활용도 제고를 언급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 전략에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134]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포괄적 FTA 체결은 필수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서비스 포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 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한 사안으로 다가온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중심의 규제 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

134)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관계자 인터뷰(2016. 10. 10, EU 집행위, 브뤼셀, 벨기에).

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규제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간에는 매우 상이한 규제체제, 입장 등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많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EU 회원국간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 수렴은 어렵지만 무역 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 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유덕. 2011.「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4호.

_____. 2013.「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EU연구』, 제34호.

강유덕, 양효은. 2015.「최근 EU의 FTA 정책 동향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27호.

강유덕, 오태현, 이철원, 이현진, 김준엽. 2014.「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세원. 2004.『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김흥종, 임유진. 2016.「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6-17호.

양효은. 2015.「EU의 투자법원 설립 추진 배경과 전망」. 2015년 지역연구 공동동향 세미나 제16호.

오세환, 심혜정. 2013.「수출상품 고급화 어디까지 왔나? - 미국수입시장에서 제조업 수출 고급화」.『Trade Focus』, Vol. 12. No. 50. 국제무역연구원.

전응길. 2013.「무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글로벌 가치사슬'」.『나라경제』, 5월.

[영문자료]

Antras, Pol and Robert W. Staiger. 2012. "Offshoring and the Role of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2012*, 102(7): 3140.3183.

Baldwin, Matthew. 2006. "EU trade politics – heaven or hell?"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3:6, September 2006. Routledge.

Baldwin, Richard and Javier Lopez-Gonzalez. 2013. "Supply-Chain Trade: A Portrait of Global Patterns and Several Testable Hypotheses." NBER Working Paper No. 18957.

Baldwin, Richard, Tadashi Ito, and Hitoshi Sato. 2014. "Portrait of Factory Asia: Production network in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growth - the 'smile curve.'" JRP Series 159.

Bendini, Roberto. 2015. "In-depth Analysis: the Future of the EU Trade Policy." Policy Department,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European Parliament. DGEXPO/B/PolDep/Note/2015_227.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2008. "GLOBAL EUROPE: An Open Door Policy for Big Business Lobbyists at DG TRADE."

Duong, Nguyen Binh. 2016. "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for Vietnam." SECO/WTI Academic Cooperation Project, Working Paper No. 07/2016.

Dür, Andreas. 2008. "Bringing Economic Intersts Back into the Study of EU Trade Policy-Mak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BJPIR)*, Vol. 10.

Ecorys. 2009.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tween the EU and ASEAN." Final Report Volume 1 –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RADE 07/C1/C01 - Lot2.

_____. 2016. "Trade SIA o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between the EU and the USA." Interm Technic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05.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COM(2005) 24 final.

_____. 2006a.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_____. 2006b.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_____. 2006c. "New Strategy puts EU trade Policy at Servic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reform."

_____. 2010a. "Trade as a driver of prosperity." SEC(2010) 1269.

_____. 2010b.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for the EU's 2020 Strategy." COM(2010)612.

_____. 2010c.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_____. 2010d.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etent of the EU's 2020 Strategy."
_____. 2011.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in practic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_____. 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SWD(2012) 209 final.
_____. 2013a.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COM(2013) 100 final.
_____. 2013b. "Impact Assessment Report on the future of EU-US trade relations." SWD(2013) 68 final.
_____. 2015a.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15) 111 final.
_____. 2015b. "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_____. 2015c. "Better Regulation 'Toolbox.'"
_____. 2015d. "EU exports to the world: Effects on Employment and Income."
_____. 2015e. "How trade polic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upport and strengthen EU economic performance."
_____. 2015f. *European Union trade in the world*.
_____. 2016a. "Guide to the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_____. 2016b.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nd edition.
_____. 2016c.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COM(2016) 470 final.
_____. 2016d. "Speech: EU Trade Priorities in 2016, 10 March 2016."
_____. 2016e.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Final Report.
_____. 2016f. "Overview of FTA and Other Trade Negotiations." Updated October 2016.
European Patent Office. 201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Gereffi, Gary. 2005. "The Global Economy: Organization, Governance

and Development." N. J. Smelser & R. Swedberg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Second edi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Gstohl, Sieglinde and Dominik Hanf. 2014. "The EUs Post-Lisbon Free Trade Agreements: Commercial Intersts in a Changing Constitutional Context." *European Law Journal*, Vol. 20, No. 6.

Harrison, James ed. 2014.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Hoekman, Bernard. 2008.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Doomed to Fail? Does it Matter?"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December 2008*, Volume 8, Issue 3-4.

Hoekman, Bernard and Alan Winters. 2005. "Trade and Employment: Stylized Facts and Research Finding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676.

Horn, Henrik, Petros C. Mavroidis, and André Sapir. 2009. "Beyond the WTO? An Anatomy of the EU and 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ruegel Blue Print Series* 7. Brussles: Bruegel.

Horng, Der Chin. 2012. "Reshaping the EU's FTA Policy in a Globalizing Economy: the Case of the EU-Korea FIA." *46 Journal of World Trade*, Issue 2.

IBM Belgium, DMI, TAC & TICON. 2008.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Trade 2007/349757/1.

IMF. 2013. "German-Central European Supply Chain - Cluster Report."

Kirkpatrick, Colin, Selim Raihan, Adam Bleser, Dan Prud'homme, Karel Mayrand, Jean-Frédéric Morin, Hector Pollitt, Leonith Hinojosa, and Michael Williams. 2011. "A Trade SIA Relating to the Negotiation of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between the EU and Canada." Final Report. Trade 10/B3/B06.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14.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2.

Krstic, Stanko S. 2011. "Regulatory cooperation to remove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products: ke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anada-EU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CETA)." The workshop entitled Enhancing Regulatory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the Canada-EU CETA Negotiations in Vancouver from May 4-5.

Kwan, Chi Hung. 2002. "The Rise of China and Asia's Flying-Geese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US Import Statistics." NRI Paper No. 52. Nomura Research Institute.

Lee, Eddy. 2005. "Trade Liberalization and Employment." UN/DESA Working Paper No. 5, ST/ESA/2005/DWP/5.

National Board of Trade. 2015. "Global Value Chains and Trade Negotiations." *Kommerskollegium*, 2015: 6.

OECD. 2013. Data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May), pp. 2-3.

_____. 2014.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olicy Brief." Background Report for the Meeting of the Council 6-7.

Orefice, Gianluca and Nadia Rocha. 2014. "Deep Integration and Production Networks: An Empirical Analysis." *The World Economy*, Volume 37, Issue 1.

Shepherd, Ben. 2013.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ing Country Employment: A Literature Review."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56. OECD Publishing: Paris.

Stevens, Christopher, Muhammad Irfan, Isabella Massa, and Jane Kennan. 2015.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Thorbecke, Willem and Hao-Kai Pai. 2013. "The Sophistication of East Asian Export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3-E-092. (November)

Timmer, Marcel P., Bart Los, Robert Stehrer, and Gaaitzen de Vries. 2013. "Fragmentation, Incomes and Jobs. An analysis of European competitiveness." Working Paper No. 9.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UN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1987. "Our Common Future." UN Documents.

White, Roger. 2014. *Making Sense of Anti-trade Sentiment: International Trade and the American Worker*. Palgrave Macmillan US.

Woolcock, Stephen. 2007. "European Union policy towards Free Trade Agreements." ECIPE Working Paper No.3/2007. ECIPE.

[온라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신통상로드맵 수립」.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8.do?brf_code_v=8#header (검색일: 2016. 11. 11).

_____. 2015.「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 발효로 확대」. 보도참고자료. (12월 14일). http://fta.go.kr/eu/paper/1/ (검색일: 2016. 11. 11).

CEPII-Chelem.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between Canad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Interinstitutional Flie: 2016/0206 (NLE) 10973/16.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0973-2016-INIT/en/pdf (검색일: 2016. 10. 5).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Agreement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agreements/(검색일: 2016. 6. 15).

_____. "DG Trade: Countries and Region: Vietnam."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vietnam/(검색일: 2016. 10. 14).

_____. "Impact assessments." http://ec.europa.eu/info/law-making-process/planning-and-proposing-law/impact-assessments_en(검색일: 2016. 9. 6).

_____. "Regulatory Scrutiny Board." http://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regulatory-scrutiny-board_en(검색일: 2016. 9. 6).

_____. "Trade in Services Agreement." http://ec.europa.eu/trade/

policy/in-focus/tisa(검색일: 2016. 10. 10).
_____.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776/attachments/1/.../pdf(검색일: 2016. 11. 28).
_____.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85Y0604(01)(검색일: 2016. 11. 28).
_____.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검색일: 2015. 10. 7).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bop_its_det&lang=en(검색일: 2016. 10. 10).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http://www.bmub.bund.de/en/topics/europe-international/europe-and-environment/eu-strategy-for-sustainable-development/#(검색일: 2016. 6. 17).
Maurer, Andreas and Joscelyn Magdeleine. 2010. "Measuring Trade in Services in Mode 4." http://artnet.unescap.org/tid/artnet/mtg/reformservice_bp3.pdf(검색일: 2016. 10. 5).
Nilsson, Lars. 2015. "EU exports and uptake of preferences: a first analysis." http://www.etsg.org/ETSG2015/Papers/155.pdf(검색일: 2016. 9. 9).
OECD. OECD/WTO Statistics on Value Added, TiVA.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5. 20).
Papageorgiou, Demetrios, Armeane M. Choksi, and Michael Michaely. 1990. "Liberalizing foreign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essons of experience." World Bank Report #9026.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24261468765268505/Liberalizing-foreign-trade-in-developing-countries-the-lessons-of-experience(검색일: 2016. 10. 10).
"TT IP is tough but govenments shouldn't give up, OECD and WTO officials say." 2016. *CNBC*. (September 3). http://www.cnbc.com/world/?region= world(검색일: 2016. 9. 6).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Agenda 21."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outcomedocuments/agendazi(검색일: 2016. 6. 17).
Van der Marel, Erik. 2015. "Positioning on the Global Value Chain Map:

Where do You Want to Be? February.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ttp://ecipe.org/publications/gvc-map/?chapter=all(검색일: 2016. 10. 10).

[법률 · 협정문 자료]

외교통상부. 2010.「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인터뷰 자료]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관계자 인터뷰(2016. 10. 10, EU 집행위, 브뤼셀, 벨기에).

부록

부록 1.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에는 영향평가(IA),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 영향평가(Economic assessment of the negotiated outcome), 사후 이행평가(Ex Post Evaluation)의 네 단계가 있다. 이 중에서도 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EU 집행위원회가 많은 상대국들과의 FTA 협상 경험을 축적하면서 체계화시켜 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후 이행평가(Ex Post Evaluation)는 기 체결 FTA가 발효 후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1) 영향평가(IA: Impact Assessment)

영향평가(이하 IA)는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절차이자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FTA 협상을 개시하기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하는 실증적 근거이다. 다른 분야의 IA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나 경쟁력 등의 이슈를 포함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객체와 정도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다.[135] 또한 어떠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물론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136] IA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더 나은 규칙을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에서 제시되었다. 동 지침서는 지침서의 명칭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EU 정책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137][138] 즉 IA는

135) IA는 EU 경제, 사회, 환경에 지대한 미칠 수 있는 법안, 권고(recommendations)나 금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FTA라고 볼 수 있다.

136)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 http://ec.europa.eu/info/law-making-process/planning-and-proposing-law/impact-assessments_en(검색일: 2016. 9. 6).

부록표 1. 영향평가(IA)에서 반드시 답변되어야 하는 질문 목록

1.	문제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2.	왜 EU가 반응해야 하나?
3.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5.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은 무엇이며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
6.	각각의 상이한 방법들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수익 대비 비용)에서 어떻게 다른가?
7.	모니터링과 차후의 소급평가 평가는 어떻게 기획될 것인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a),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15) 111 final, pp. 18-19.

[표 4-3]에 나타난 것처럼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SIA에서 어떤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지 등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를 준비하는 단계로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IA가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다루는 반면,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더 나은 규칙을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과 연계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용 절감,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등 효율적이고 향상된 규칙을 지향하는 REFIT(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REFIT은 EU 신규법안 혹은 기 제정된 법률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이다. FTA 등 EU의 무역협상도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REFIT 검토대상이며 IA를 통해서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는다.[139]

137) European Commission(2015a),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15) 111 final, p. 5.

138) Better Regulation Guidelines는 Better Regulation 'Toolbox'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짐.

139) European Commission(2015a),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15) 111 final, pp. 8-9.

2)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는 FTA 협상 중에 진행되는 사전평가(ex ante assessment)로 EU 통상협상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SIA는 1999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EU의 포괄적 FTA가 확대됨에 따라 SIA의 체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3월에 SIA안내서(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발간했다. 동 안내서는 SIA가 ① 통상정책 내 지속가능성의 반영과 ② 모든 관계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음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140] 신통상정책에 맞추어 "더 나은 규칙을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을 발표한 이후 2016년 4월에 SIA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동 개정본은 SIA가 협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만들어진 평가임을 강조했다.[141]

SIA는 협상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게 되고 [그림 4-2]와 같이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최종보고서(Final report)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SIA는 전문성을 지닌 컨설턴트가 경쟁 입찰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아 투명한 절차를 걸쳐 독립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SIA 최종보고서에서 컨설턴트가 발견한 내용 혹은 제안을 토대로 협상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및 활용할 것인지 성명서(position paper)를 발표하게 된다. SIA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외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는 절

---

140) European Commission(2006b),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p. 7.

141) European Commission(2016b),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nd ed., p. 5.

부록그림. 무역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의 통상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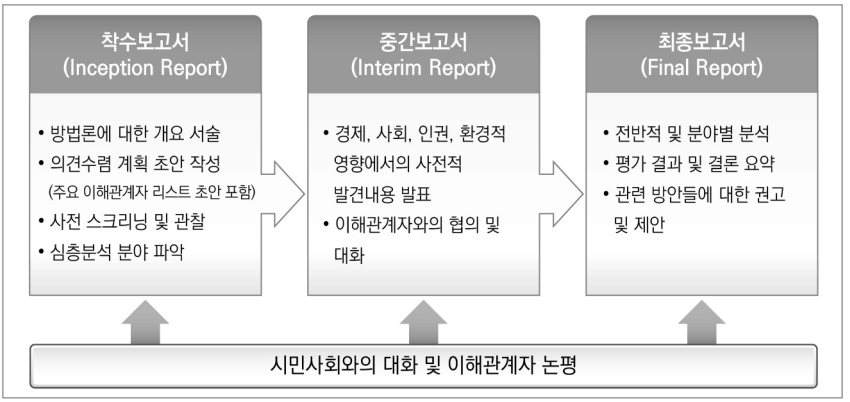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b),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nd edition, p. 13.

차가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SIA의 핵심은 분석(analysis)과 협의(consulta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은 다시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분야 대한 심층 분석으로 나뉘는바, 심층 분석은 SIA가 IA와 구분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 분석에서는 IA에서 다루어진 분석을 보완하고 있으며, 생산, 무역량, 가격, 재정수지, 후생 등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은 물론 고용이나 준수 비용(compliance) 등을 포함하여 특정분야에서의 무역협상으로 인한 영향과 기능, 경쟁력 등을 다룬다.[142)]

사회 분석은 무역협정이 사회에 대해 어떤 중대한(significant)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고용이나 노동조건, 소득분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SIA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활용하되 어떤 방법으로 영향평가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요구하는 등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권 분석 역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국제법이나 EU법상에서의 인권,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등을 따르고 있

142) *Ibid.*, p. 18.

다. 인권에 대한 영향은 신통상정책하에서 더욱 강조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분석은 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환경적인 영향, 미시적 수준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영향, 기술효과로 인한 생산 공정 및 방법에의 영향,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영향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대기 품질, 에너지 사용, 수질 및 수자원, 토지 사용, 토양 품질, 쓰레기와 쓰레기 관리,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및 보존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을 포함한다.[143]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은 각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 하위 항목 부문, 활동, 상품, 취약 사회계층/지역 등 모든 국가들과의 협상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협상 상대국에 따라 시장,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혹은 상실, 중소기업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assessment of the negotiated outcome)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이하 경제적 영향평가)는 협상 타결 후 서명 전에 진행되는 절차로 타결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준비한다. 경제적 영향평가의 내용에는 타결된 FTA의 정치・경제적 의의, 기체결된 타 FTA와의 비교, 타결된 FTA의 주요 양허 내용과 예상 이익, 동 FTA 비준/발효 지연 시 비용・편익 등이 포함된다. FTA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되나, 대체로 SIA에서 예상한 시나리오 중 타결된 개방 수준의 내용을 반복・정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영향평가의 역할이 EU 집행위원회가 타결한 협정문의 유럽의회 비준을 용이하게 하도록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44]

---

143) *Ibid.*, p. 23.

144) Bendini(2015), p. 22.

4) 사후 이행평가(Ex Post Evaluation)

사후 이행평가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 발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 데이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145] 사후 이행평가가 두드러진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포괄적 FTA에 대한 사후 이행평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EU・멕시코 FTA 등 아직까지 사후 이행평가가 진행된 사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SIA처럼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EU FTA의 사례와 같이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FTA 이행에 대한 간이 형식의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45) Nilsson(2015), p. 3.

부록 2.

부록표 2. 상품고급화지수(PSI: Product Sophistication Index)

품목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Aero- nautics (3530)	13,299	24,102	32,523	28,765	37,828	51,272	61,035
Wea- pons (2927)	13,239	23,036	31,061	28,462	37,687	43,171	48,572
Engines Turbin. (2911)	12,599	22,805	30,502	28,165	37,520	41,338	44,664
Parts for veh (3430)	12,171	22,733	30,169	28,141	37,444	41,093	44,461
Measur. instr. (3312)	12,095	22,581	29,853	27,821	36,692	40,849	43,365
Mach.fr mining (2924)	12,073	22,481	29,845	27,724	35,695	39,901	43,344
Pulp paper (2101)	11,980	22,441	29,243	27,557	35,516	39,602	43,196
Medical equip. (3311)	11,675	22,369	29,073	27,353	35,268	39,335	42,183
News- papers (2212)	11,611	22,181	28,730	26,897	34,341	39,047	41,698
Control equip. (3313)	11,566	22,176	28,653	26,689	34,326	38,409	41,176
Pesti- cides (2421)	11,518	22,021	28,445	26,558	34,095	38,386	40,831
Comput. equip. (3000)	11,303	21,959	28,439	26,506	33,776	38,165	40,774
Motor- cycles (3591)	11,102	21,936	28,343	26,395	33,742	37,900	40,524
Record. media (2213)	11,080	21,890	28,232	25,930	33,581	37,390	40,505
O.spec. mach. (2929)	11,054	21,816	28,153	25,926	33,500	36,775	40,345
TVradio transm. (3220)	11,008	21,765	28,099	25,656	33,493	36,471	39,751
O.gen.p mach. (2919)	10,951	21,647	27,897	25,532	33,451	36,426	39,297
Print. serv. (2222)	10,941	21,646	27,878	25,518	33,189	35,996	38,881
Bodies for veh (3420)	10,872	21,605	27,839	25,205	32,888	35,586	38,628
Ovens Furnace (2914)	10,811	21,598	27,764	25,158	32,799	35,266	38,343
Optics Photo (3320)	10,763	21,567	27,648	25,122	32,485	34,503	37,547
O.chem. prod. (2429)	10,732	21,565	27,524	24,949	31,582	34,495	37,310
El.dist appar. (3120)	10,729	21,537	27,221	24,784	31,459	34,447	37,196
Pumps (2912)	10,708	21,529	27,147	24,667	31,420	34,294	37,132
O.elec. equip. (3190)	10,671	21,379	27,113	24,410	31,301	34,186	36,754
Prep. wood (2010)	10,638	21,339	27,080	24,402	31,260	34,178	36,684
Nuclear fuel (2330)	10,606	21,335	27,057	24,388	30,967	34,140	36,566
Agr.for mach. (2921)	10,589	21,303	26,810	24,238	30,967	34,039	36,418
Watches Clocks (3330)	10,580	21,298	26,312	24,224	30,842	33,978	36,391
Print- ing (2221)	10,568	21,262	26,240	24,199	30,732	33,811	36,383
Motor vehicl. (3410)	10,563	21,232	26,080	24,107	30,657	33,662	36,210

부록표 2. 계속

품목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Machine tools (2922)	10,548	21,188	26,009	24,017	30,533	33,375	36,043
Books (2211)	10,540	21,178	26,003	23,910	30,417	32,905	35,974
Paper ctainer (2102)	10,466	21,115	25,885	23,837	30,402	32,886	35,974
O.paper art. (2109)	10,395	21,109	25,623	23,770	30,307	32,825	35,894
O.n.met mineral (2699)	10,389	21,087	25,373	23,378	30,101	32,726	35,224
Paints Ink... (2422)	10,330	21,064	25,348	23,315	29,854	32,468	34,942
Mach.fr metall. (2923)	10,238	20,951	25,334	23,271	29,750	32,432	34,879
Lifting equip. (2915)	10,206	20,908	25,222	23,247	29,721	32,357	34,336
Other textil. (1729)	10,193	20,875	25,195	22,958	29,378	32,324	34,244
Steam gener. (2813)	10,192	20,797	25,189	22,915	29,273	32,041	34,157
Pharm. prod. (2423)	10,171	20,639	25,155	22,878	29,021	31,921	33,538
Plastic prod. (2520)	10,126	20,554	25,148	22,715	28,978	31,830	33,431
Mach.fr food (2925)	10,115	20,544	25,148	22,712	28,914	31,794	33,393
Primary plastic (2413)	10,077	20,529	25,051	22,379	28,418	31,535	32,827
Electr. motors (3110)	9,918	20,521	24,911	22,362	27,992	31,408	32,727
Gears (2913)	9,893	20,435	24,634	22,333	27,768	31,342	32,257
B.chem. ex fert (2411)	9,873	20,414	24,559	21,905	27,731	30,324	32,196
O.trans port eq (3599)	9,851	20,320	24,519	21,890	27,656	30,047	31,990
Manmade fibers (2430)	9,850	20,178	24,511	21,838	27,641	29,570	31,370
Refract ceramic (2692)	9,847	20,036	24,445	21,718	27,519	29,552	31,299
Electr. compon. (3210)	9,807	19,760	24,354	21,668	27,173	29,339	31,143
Mach.fr textile (2926)	9,770	19,728	24,217	21,636	27,051	28,905	30,637
Soap Perfum. (2424)	9,745	19,655	24,206	21,523	26,946	28,828	30,620
Concre- te art. (2695)	9,717	19,617	24,125	21,345	26,818	28,573	30,416
Tanks (2812)	9,695	19,579	23,866	21,240	26,543	28,155	30,236
N.ferr. metall. (2720)	9,679	19,550	23,801	20,938	26,181	28,065	30,098
Cutlery Tools (2893)	9,661	19,535	23,561	20,846	25,936	27,642	29,810
Recycl. metals (3710)	9,534	19,495	23,544	20,578	25,727	27,616	29,740
Carpen- try (2022)	9,522	19,481	23,407	20,404	25,703	26,342	28,518
TVradio receiv. (3230)	9,460	19,462	23,320	20,118	24,667	25,925	28,422
Accum. Batter. (3140)	9,318	19,137	23,030	19,962	24,633	25,860	28,222
O.metal prod. (2899)	9,315	19,114	22,792	19,694	24,502	25,835	27,670
Domest. appl. (2930)	9,298	19,075	22,508	19,645	24,419	25,676	27,481
Glass and pr. (2610)	9,297	18,881	22,414	19,554	24,144	25,618	27,031
Other publish (2219)	9,169	18,723	22,350	19,412	23,994	25,608	26,940
Wires Cables (3130)	9,140	18,608	21,983	19,385	23,801	25,470	26,771

부록표 2. 계속

품목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Tyres (2511)	9,119	18,588	21,716	19,360	23,762	25,155	26,262
Ferti- lizers (2412)	9,119	18,571	21,530	19,317	23,718	24,982	26,230
Musical instr. (3692)	8,997	18,322	21,062	19,250	23,664	24,927	26,069
Railway (3520)	8,985	18,267	20,950	19,178	23,381	23,800	25,895
Iron me tallurg (2710)	8,915	18,028	20,802	18,788	23,154	23,171	25,468
Pleas. boats (3512)	8,902	17,955	20,410	18,273	22,734	23,045	25,209
N.refr. ceramic (2691)	8,844	17,920	20,350	17,953	22,675	22,527	25,120
Coke oven p. (2310)	8,833	17,906	20,100	17,736	22,474	22,425	24,270
Struct. metal p (2811)	8,783	17,721	20,035	17,357	22,125	22,172	23,861
Elec. lamps (3150)	8,764	17,683	19,583	17,109	21,272	22,159	23,665
Furni- ture (3610)	8,724	17,278	19,547	17,062	21,262	21,756	23,501
Bicy- cles (3592)	8,638	16,924	19,536	16,617	20,765	21,529	23,155
Other manuf. (3699)	8,572	16,503	19,532	16,286	20,255	21,518	22,207
Sports goods (3693)	8,458	16,455	19,268	16,182	20,171	21,402	21,986
Wooden ctainer (2023)	8,189	16,440	19,015	16,033	19,938	21,015	21,870
Ships (3511)	8,151	16,232	18,304	16,029	19,588	20,809	21,851
Struct. n.refr. (2693)	7,929	16,215	18,131	15,522	19,310	20,368	21,825
Jewel- lery (3691)	7,781	16,196	18,015	15,503	18,944	20,315	21,177
Fur and articl. (1820)	7,582	16,179	17,449	15,432	18,925	19,952	21,130
Veneer Plywood (2021)	7,552	15,448	17,297	14,571	18,449	19,600	21,085
Rubber pr. nes (2519)	7,522	15,230	16,249	14,253	18,182	19,593	21,020
Carpets Rugs (1722)	7,360	14,376	16,234	13,788	17,828	17,507	19,061
Leather (1911)	7,149	13,989	15,932	13,636	17,731	17,440	19,035
Games Toys (3694)	7,108	13,845	15,743	13,411	17,317	17,430	18,957
Tex.fib Fabrics (1711)	7,072	13,802	15,734	13,212	16,035	16,595	18,424
Cut stones (2696)	6,987	13,784	15,722	13,138	15,995	16,411	18,047
Cement (2694)	6,887	13,589	15,396	12,583	14,839	16,139	17,999
Refined petrol. (2320)	6,545	13,349	15,045	11,077	14,771	15,940	17,745
O. wood cork p. (2029)	6,545	13,090	14,857	10,254	14,423	15,648	17,581
Knit- wear (1730)	6,538	12,207	12,549	10,025	13,047	15,645	16,726
Cordage (1723)	6,296	11,660	12,469	9,927	12,803	15,154	16,517
O.text. articl. (1721)	5,736	11,278	12,016	9,814	12,053	14,206	16,217
Wearing apparel (1810)	5,357	11,127	11,658	9,391	11,184	12,561	14,817
Foot- wear (1920)	5,316	11,011	11,272	9,258	10,398	11,876	9,767
Luggage Harness (1912)	5,305	11,007	7,238	5,699	10,384	7,498	7,667

주: 82개국, 102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 괄호안은 ISIC 코드임.
자료: CEPII-Chelem을 활용한 저자의 계산, https://chelem.bvdep.com(검색일: 2016. 10. 10).

Executive Summary

EU's FTA Strategies in its New Trade Policy Initi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Heungchong, LEE Cheol-Won, LEE Hyun Jean,
YANG Hyoeun, and KANG Yoo-Duk

Since the Global Europe Initiative in 2006, the EU has conducted active trade policy measures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social cohesion in the community. One of the conspicuous features of the new trade policy is that the EU does its best to support EU companies to benefit from better market access through new trade policy tools. Comprehensive and high-leveled bilateral FTA initiatives, among others, have rapidly emerged as a major tool of the new trade policy to achieve the goals.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illuminate how the goals of the new trade policy have been achieved through EU's FTA strategies. To do thi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hree topics of EU standards, evaluation process of market openness and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at is, how much EU's FTA strategies have contributed to achieving globalization of EU standards, job creation through careful evaluation processes and economic growth of the community by utilizing GVCs.

First, the EU has made tremendous efforts to export its standards to

other countries through various FTAs. Within its Community, the EU has tried to introduce unified technical and sanitary standards, but after little progress was observed, revised its standardization strategy to adopt a narrower harmonization area, leaving more flexibility in the area of general conformity. Since 1989, the EU has conducte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ts community standards, and the process has been accelerated through bilateral FTAs after the new trade policy was initiated in the mid-2000s. The Korea-EU FTA w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EU's efforts in standard internationalization, which was also adopted in the EU-Canada CETA and the EU-Vietnam FTA. In the mega-FTAs, EU's efforts to export its standards do not seem to be so successful, not only because the EU faced big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throughout the TTIP negotiations, but because uncertainties have grown after Brexit and a variety of standards have sprung up in the world recently.

Second, it is utmost important that the FTA evaluation proces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conducted properly, in order to assess any impact of FTAs on community labor markets. EU has set out four stages for this evaluation process: impact assessment (IA),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 economic assessment of the negotiated outcome, and ex post evaluation. These assessments not only encompass aspects of quantitative economic analysis, but also qualitative economic analysis and social impacts such as broad impacts on the labor market, SMEs, competitiveness, income distribution, environment, human rights, etc.

The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 among others, is particularly interesting with regards to the impacts of FTAs on

employment. In the EU-Korea FTA SIA report, it is revealed that the Korea-EU FTA would bring about positive impacts on agriculture and services employment, but minor negative impacts on the manufacturing labor market. The dairy industry, with the exception of pork, would win in the case of a EU-Canada CETA, and manufacturing including automobiles would gain in employment in the case of an EU-Vietnam FTA. The TTIP may lead positive impacts on employment through a mutual investment boom, the TTIP SIA argues.

Third, the FTAs pursued by the EU make full use of expansion of GVCs. The EU has set out global standards, prevailed competition in the services market, moved to high value-added stages in GVCs, strengthened market access not only in final goods but in the intermediate goods market. In addition, EU has increased forward linkage participation, provided better protection for IPRs, facilitated e-commerce, financial services supply and mode 4.

Based upon the EU's FTA strategies revealed in its new trade polic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ould follow: First, as for standard internationalization, we need to scrutinize vari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into several categories, and deal with them to the purposes. In case the standards would be helpful to globalize Korean standards, then we need to introduce them, which would help Korea lead the standard competition in East Asia. In newly emerging areas including IT, environment, and new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would be strongly recommended to lead platform competition. In this regard, we need to examine Chinese standards as they have rapidly emerged as a new competitor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Korea has its own assessment system in FTAs, but we need to cover a wider range of assessment fields such as social impacts and qualitative and institutional areas. A four-stage assessment system would be much more recommendable to conduct careful assessment of market opening. A stricter assessment process would be much helpful in maintaining public support to further FTA initiatives.

Third,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GVCs, it is much desirable to upgrade value chains, and strengthen market access in East Asia in all stages of process. We need to focus more on the issues how to lift NTBs, widen services market opening, and persuade our trade partners to conduct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IPR protection. A single market for e-commerce and services must be established in East Asia.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rules of origin among FTAs in East Asia, special dialogue channels must be created in RCEP or Trilateral FTA. More importantly, cooperative bodies for the East Asia Regulatory Dialogue can be utilized.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지영 · 최유정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鮮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삐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후카오 쿄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яр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김흥종(金興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c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 Changing Landscape (공저, 2013)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공저, 2013) 외

이철원(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공저, 2014)
『저성장 시대의 고용 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5) 외

이현진(李賢眞)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jean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공저, 2014)
『저성장 시대의 고용 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5) 외

양효은(梁姬恩)

아메리칸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워릭대학교 국제금융규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he@kiep.go.kr)

저서 및 논문

"The Aftermath of the Brexit Referendum: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 in the UK"(2016)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31, 2016) 외

강유덕(康裕德)

파리정치대학 국제통상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現, E-mail: ydkang@hufs.ac.kr)

저서 및 논문

『유럽의 경기침체가 한 · EU FTA 이후 대EU 수출에 미친 영향: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한 요인분석』(2016)

Designing a growth-friendly welfare system: Implications from empirical analysis of OECD countries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18

EU's FTA Strategies in its New Trade Policy Initi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Heungchong, LEE Cheol-Won, LEE Hyun Jean,
YANG Hyoeun, and KANG Yoo-Duk

2015년 10월 EU는 신통상투자전략을 발표하여 2006년 이래 지속되어온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이어나갔다. EU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통상투자정책의 수단을 구사하여 해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EU의 이해가 걸려 있는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지속가능발전 이슈 등을 상대국에 관철시켜나가고자 한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인 FTA를 통해서 역내 고용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EU 신통상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EU의 이러한 의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EU의 신통상정책이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9 788932 216331 94320

ISBN 978-89-322-1633-1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